www.i-sh.co.kr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2026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74 일원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3단지)

▶ **공급대상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305세대 (전용면적 49㎡ 590세대, 59㎡ 715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10. 16.(금)**

일정구분			접수기간
사전청약 당첨자			2026.10.26.(월) 10:00 ~ 10.27.(화) 17:00
특별공급	청년		2026.11.02.(월) 10:00 ~ 2026.11.03.(화) 17:00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일반공급	1순위자	서울시 2년 이상 거주	2026.11.04.(수) 10:00 ~ 17:00
		서울시 2년 미만 거주, 수도권	2026.11.05.(목) 10:00 ~ 17:00
	2순위자		2026.11.06.(금) 10:00 ~ 17:00
당첨자발표			2026.11.26.(목) 16:00 이후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www.i-sh.co.kr

주택분양팸플릿

고덕강일지구 3단지

GODEOK GANGIL DISTRICT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고덕강일지구 3단지

CONTENTS

05 · 개요

06 · 토지이용계획도

07 · 지역도

08 · 단지조감도

09 · 단지배치도

10 · 동·호수 배치도

15 · 단위세대 평면도

40 · 세대내 마감자재 목록

42 · 분양일정 안내

GODEOK GANGIL DISTRICT 3

개요

단지현황

사업주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단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3단지
건설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74 일원
시공업체	에이치에스화성(주), (주)서해종합건설, 홍문종합건설(주)
입주예정시기	2027. 05. 말(예정)
난방방식	지역난방

주택건설현황(전용면적기준)

지구 및 단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3단지							
전체 세대수	1,305							
전용면적별 세대수	49㎡				59㎡			
	590				715			
	A	B	C1	C2	A	B	C1	C2
	44	15	115	36	42	107	3	3
	C3	D	E	F	D1	D2	E	F
	27	24	46	138	107	27	78	81
	G	H	I	J	G	H1	H2	I
	14	74	18	13	213	22	20	12
	K							
	26							

토지이용계획도 | 지역도

※ 상기 토지이용계획도 및 지역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토지이용계획도 및 지역도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일산
평내호평·가평
수석
마석·춘천
덕소삼패
한강공원 삼패지구
TG 구리남양주
구리시 곤충생태관
구리타워
수석리토성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왕숙천
서울양양고속도로
경의중앙선
덕소역
구리토평 가족캠핑장
마음나루거리
수석한강공원
한강
미사대교
한강
양평·여주
토평
미사리축구장
미사
서울양양고속도로
선동교차로
미사한강공원
강동대교
미사강변 고등학교
미사강변 중학교
바운스슈퍼파크 하남센터
은가람중학교
강빛숲공원
서울강빛 초등학교
강빛중학교
한강
강일
여울빛 공원
미사누리공원
구산성지
944정거장(예정)
미사고등학교
고덕강일3단지
올림픽대로
고덕수변 생태공원
강일근린공원
강동중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강동고덕
하남미사 보건센터
미사도서관
카누경기장
이케아 강동점
이마트푸드마켓 고덕점
고덕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강일구민 체육센터
하남종합운동장
쥬라리움 하남점
강일동 주민센터
943정거장(예정)
강일고등학교
망월천
미사 문화거리
미사역
942정거장(예정)
미사 호수공원
미사강변공원
광문고등학교
하남고등학교
샘터 근린공원
고덕중학교
서울컨벤션 고등학교
동명근린공원
벌말 근린공원
하남시 일가도서관
상일동역
강일역
고덕역 (환승예정)
고덕평생학습관
이마트 명일점
강명중학교
명일근린공원
미사숲공원
강동경희 대학교병원
강동숲속도서관
고덕사회체육센터
보바스병원
하남풍산역
이마트 하남점
강동아트센터
풍산고등학교
강동고등학교
한영중학교
한영고등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상일여자고등학교
상일미디어고등학교
코스트코코리아 하남점
상일
하남수산물시장
940정거장(예정)
경기광주·용인
이천·청주

단지조감도 | 단지배치도

※ 상기 단지조감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단지조감도는 개발 후의 예상 이미지이며, 해당 기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 보도, 녹지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고속도로(방음벽 포함)가 인접하여 있으므로 주변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위 사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이동통신 구내중계 설비의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고층에 설치되는 태양광패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수평으로 설치됩니다.

고덕강일지구 3단지 총 1,305세대

49A	49B	49C1	49C2	49C3	49D	49E	49F	49G	49H	49I	49J	49K
44	15	115	36	27	24	46	138	14	74	18	13	26

59A	59B	59C1	59C2	59D1	59D2	59E	59F	59G	59H1	59H2	59I *복층
42	107	3	3	107	27	78	81	213	22	2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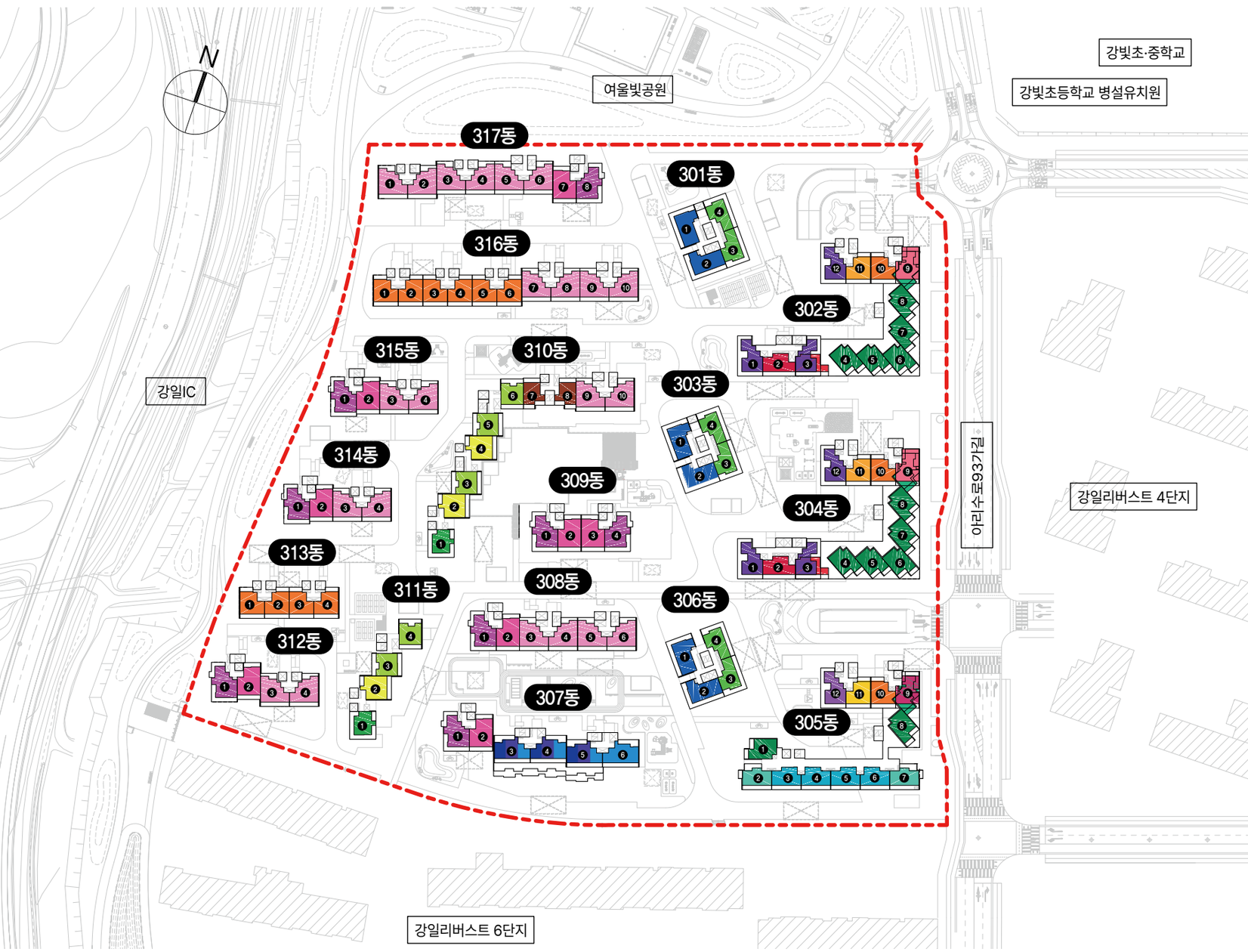

※ 상기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단지배치도상 동일한 전용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구조 및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동호수배치도

49A	49B	49C1	49C2	49C3	49D	49E	49F	49G	49H	49I	49J	49K

59A	59B	59C1	59C2	59D1	59D2	59E	59F	59G	59H1	59H2	59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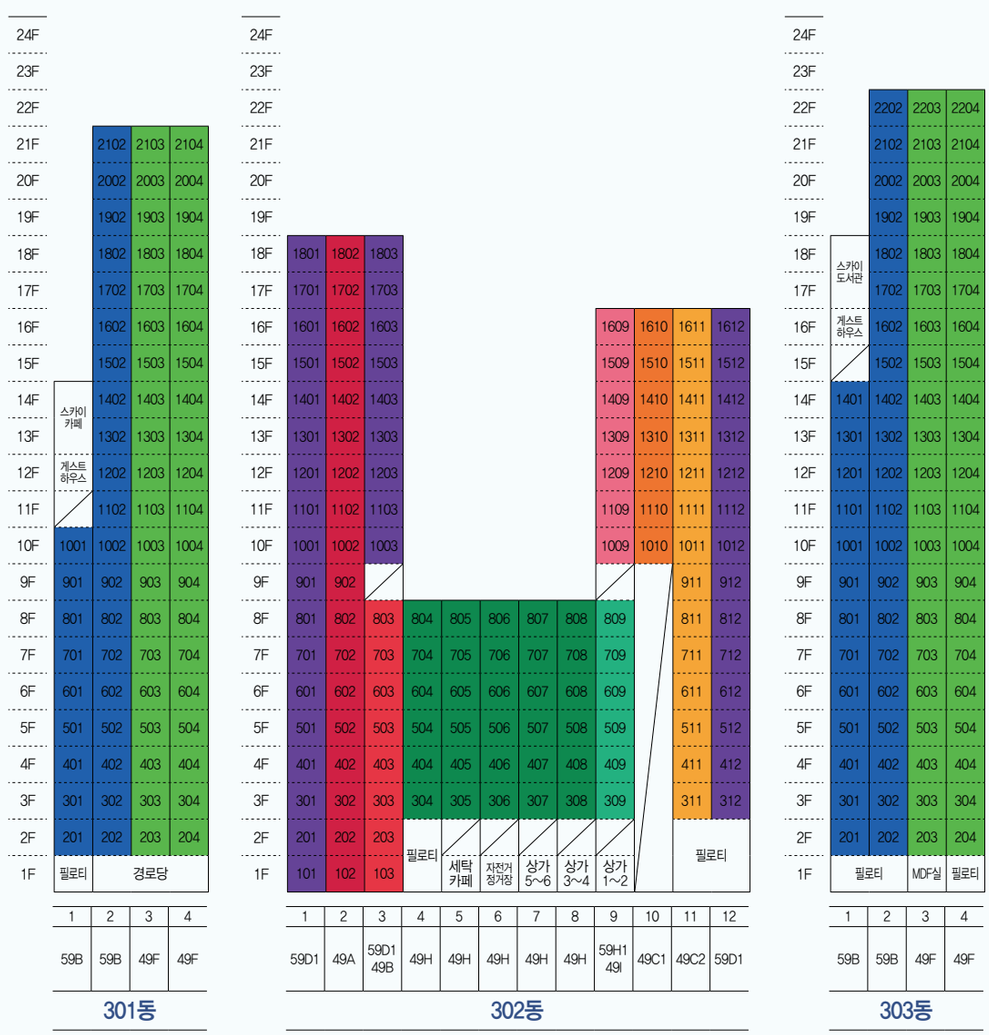

※ 상기 동·호수 배치도에는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02동 3~9라인 3~8층은 복도형으로 설계되었으며, 인접한 계단실형 부분(1~2라인)과 복도형 부분 사이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어 방화문 개방 시 1~2라인은 복도형처럼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수배치도

49A	49B	49C1	49C2	49C3	49D	49E	49F	49G	49H	49I	49J	49K

59A	59B	59C1	59C2	59D1	59D2	59E	59F	59G	59H1	59H2	59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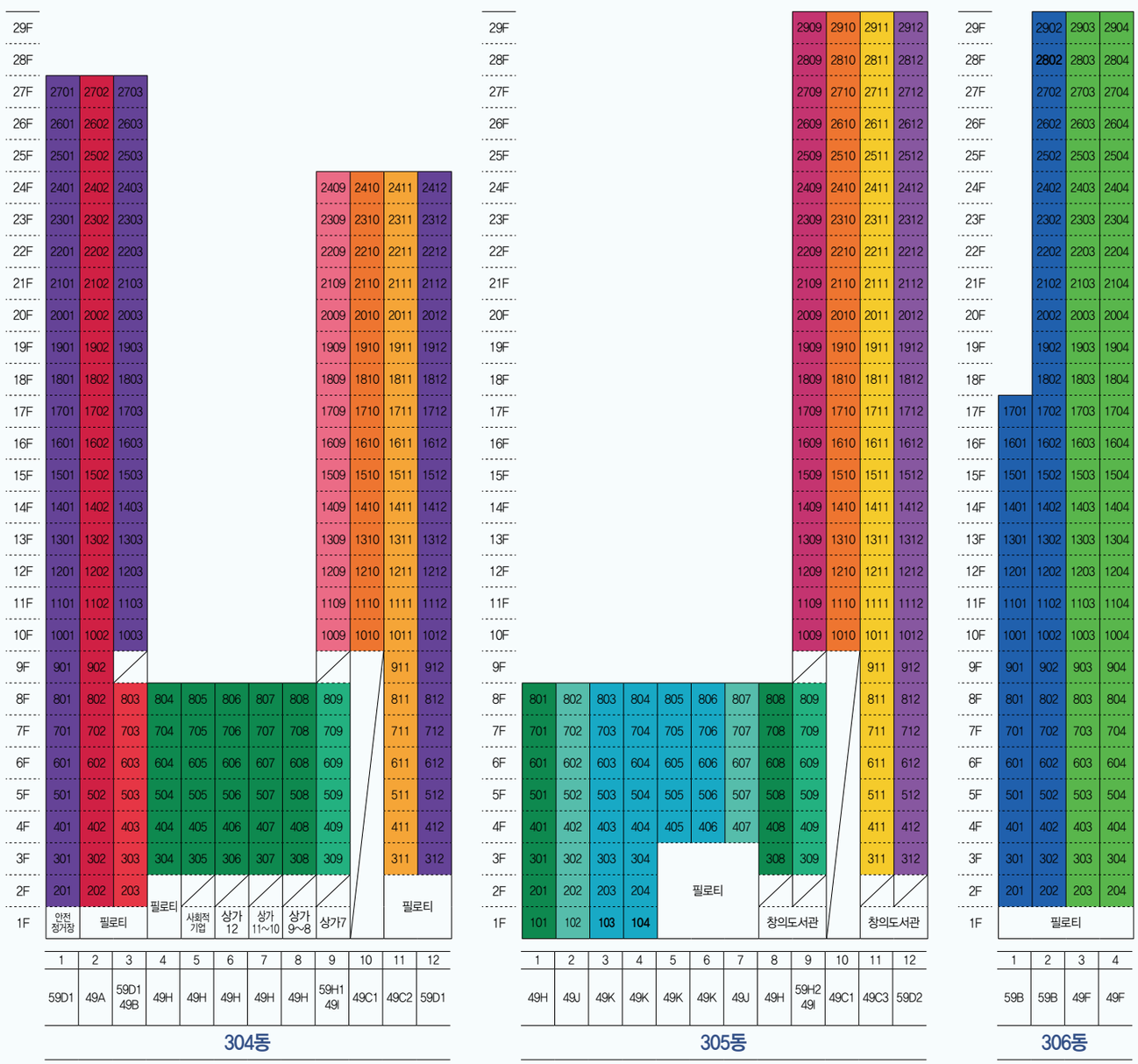

※ 상기 동·호수 배치도에는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04동 3~9라인 3~8층은 복도형으로 설계되었으며, 인접한 계단실형 부분(1~2라인)과 복도형 부분 사이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어 방화문 개방 시 1~2라인은 복도형처럼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305동 1~9라인 4~8층은 복도형으로 설계되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수배치도

49A	49B	49C1	49C2	49C3	49D	49E	49F	49G	49H	49I	49J	49K

59A	59B	59C1	59C2	59D1	59D2	59E	59F	59G	59H1	59H2	59I

※ 상기 동·호수 배치도에는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07동 203·204·205호, 303·304·305호는 테라스 세대임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310동 7~8라인 59I 타입은 복층 세대임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수배치도

49A	49B	49C1	49C2	49C3	49D	49E	49F	49G	49H	49I	49J	49K

59A	59B	59C1	59C2	59D1	59D2	59E	59F	59G	59H1	59H2	59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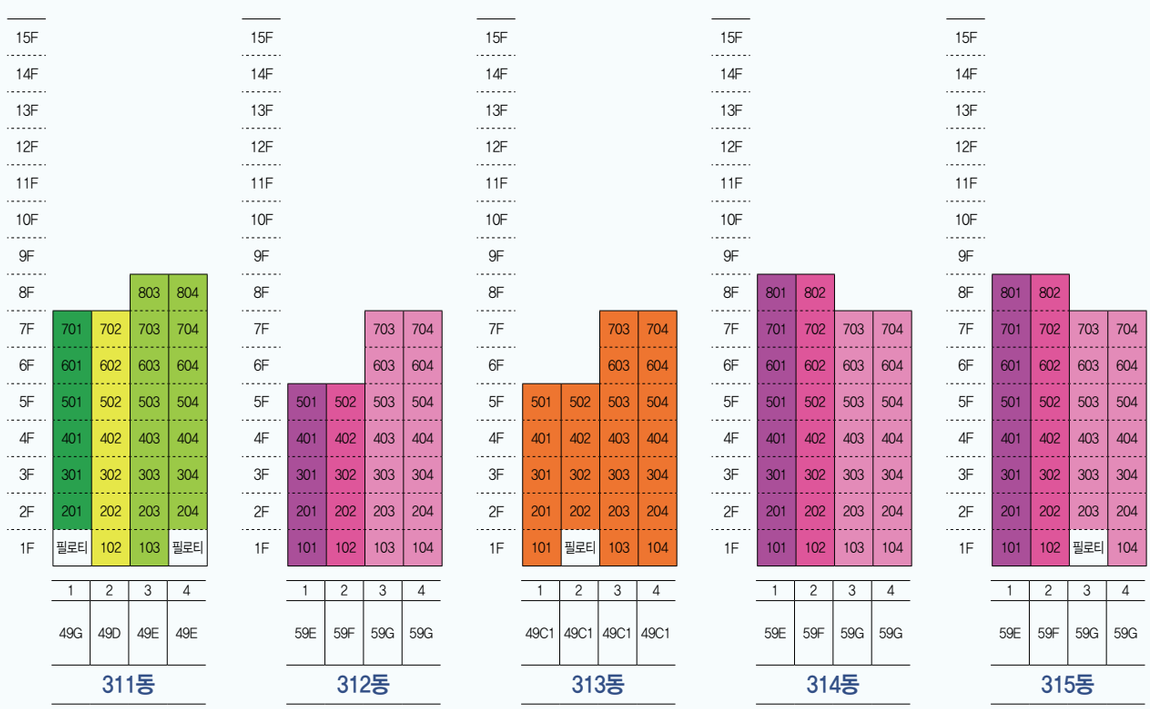

※ 상기 동·호수 배치도에는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수배치도

49A	49B	49C1	49C2	49C3	49D	49E	49F	49G	49H	49I	49J	49K

59A	59B	59C1	59C2	59D1	59D2	59E	59F	59G	59H1	59H2	59I

	1	2	3	4	5	6	7	8	9	10
15F										
14F										
13F							1307	1308	1309	1310
12F							1207	1208	1209	1210
11F							1107	1108	1109	1110
10F							1007	1008	1009	1010
9F	901	902			905	906	907	908	909	910
8F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7F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6F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5F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4F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3F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2F	201	202	203	204	205	필로티	207	208	209	210
1F	101	102	103	104	105		107	108	109	필로티
	49C1	49C1	49C1	49C1	49C1	49C1	59G	59G	59G	59G

316동

	1	2	3	4	5	6	7	8
15F							1507	1508
14F							1407	1408
13F							1307	1308
12F							1207	1208
11F							1107	1108
10F							1007	1008
9F	901	902			905	906	907	908
8F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7F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6F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5F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4F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3F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2F	201	202	203	204	필로티	206	207	208
1F	101	필로티		104		106	107	필로티
	59G	59G	59G	59G	59G	59G	59F	59E

317동

※ 상기 동·호수 배치도에는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9A

44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49.96㎡	지하주차장	44.75㎡
주거공용면적	22.58㎡	계약면적	121.98㎡
기타공용면적	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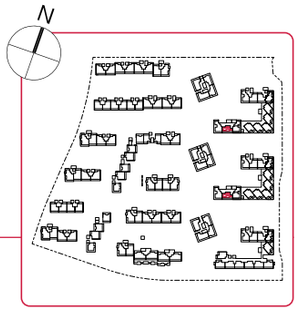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타입 중 302동 3~8층, 304동 3~8층은 인접한 복도형 부분 세대들 사이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어 방화문 개방 시 복도형처럼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49B

15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49.97㎡	지하주차장	44.76㎡
주거공용면적	22.59㎡	계약면적	122.01㎡
기타공용면적	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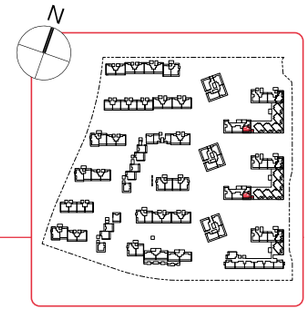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 본 타입 중 302동 3~8층, 304동 3~8층은 복도형으로 설계되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49C1

115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49.97㎡	지하주차장	44.76㎡
주거공용면적	22.22㎡	계약면적	121.64㎡
기타공용면적	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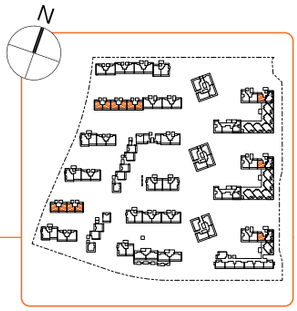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9C2

36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49.32㎡	지하주차장	44.18㎡
주거공용면적	22.64㎡	계약면적	120.76㎡
기타공용면적	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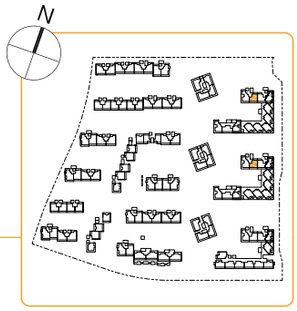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49C3

27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49.19㎡	지하주차장	44.06㎡
주거공용면적	22.72㎡	계약면적	120.59㎡
기타공용면적	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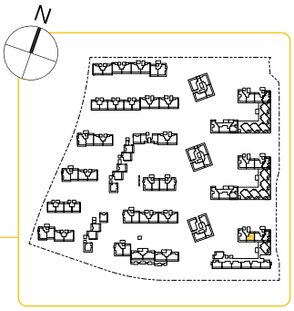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9D

24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49.96㎡	지하주차장	44.75㎡
주거공용면적	22.25㎡	계약면적	121.65㎡
기타공용면적	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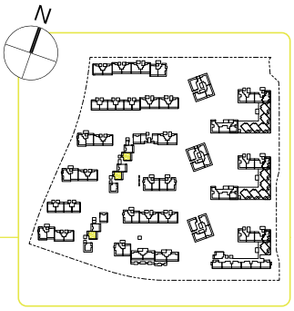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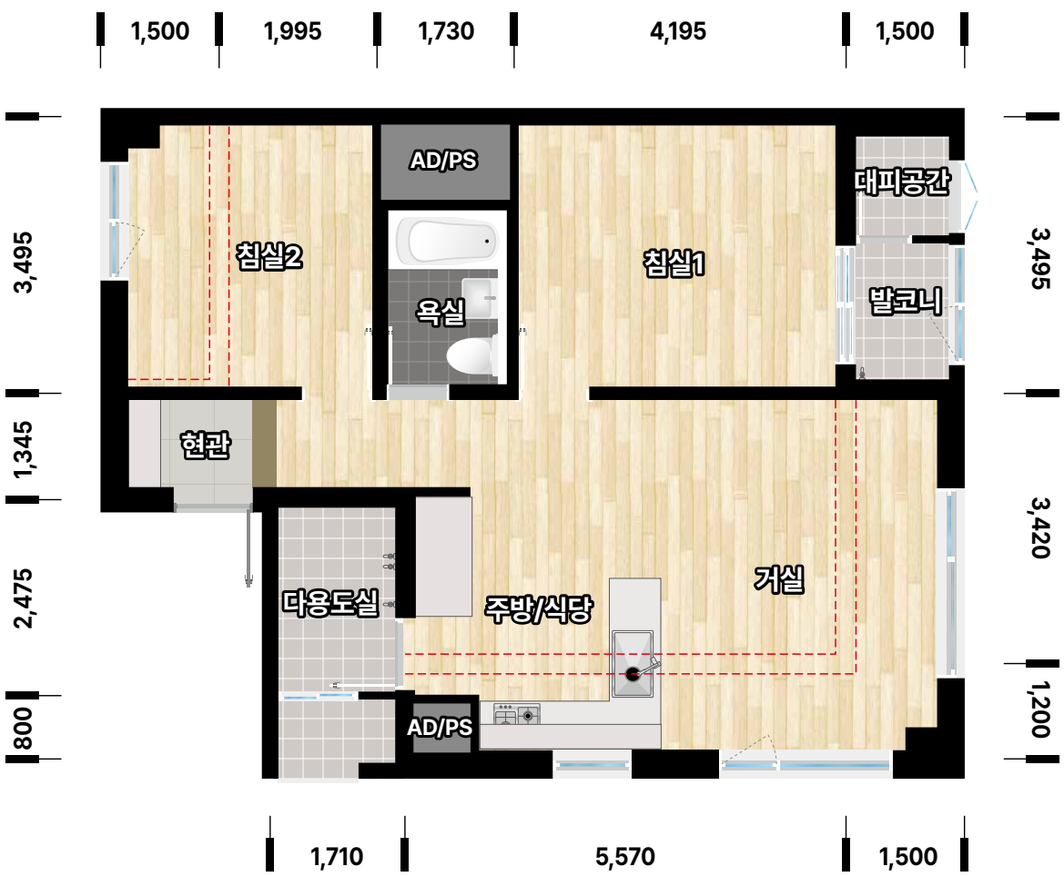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49E

46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49.92㎡	지하주차장	44.72㎡
주거공용면적	22.40㎡	계약면적	121.72㎡
기타공용면적	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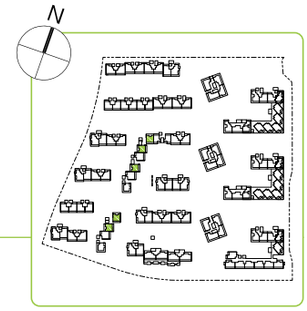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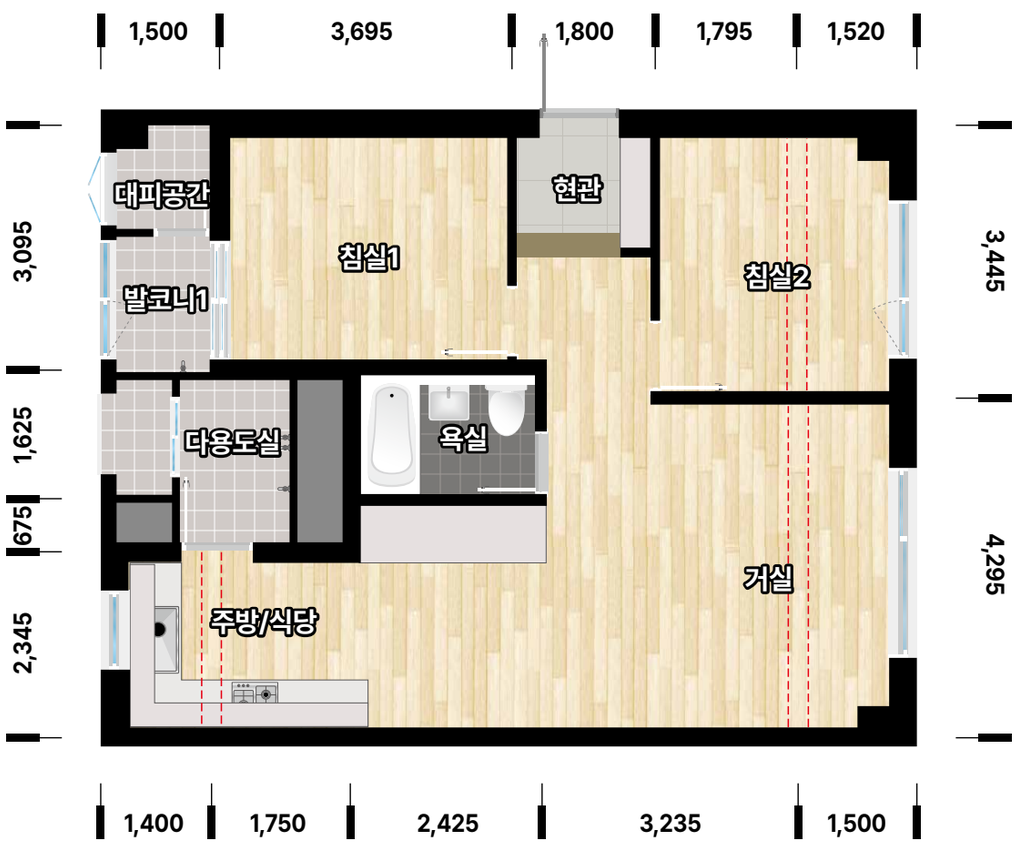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9F

138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49.95㎡	지하주차장	44.74㎡
주거공용면적	22.69㎡	계약면적	122.06㎡
기타공용면적	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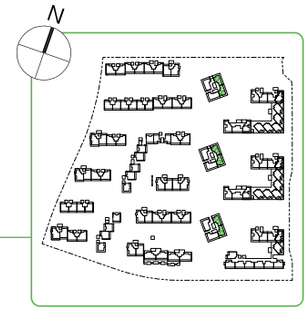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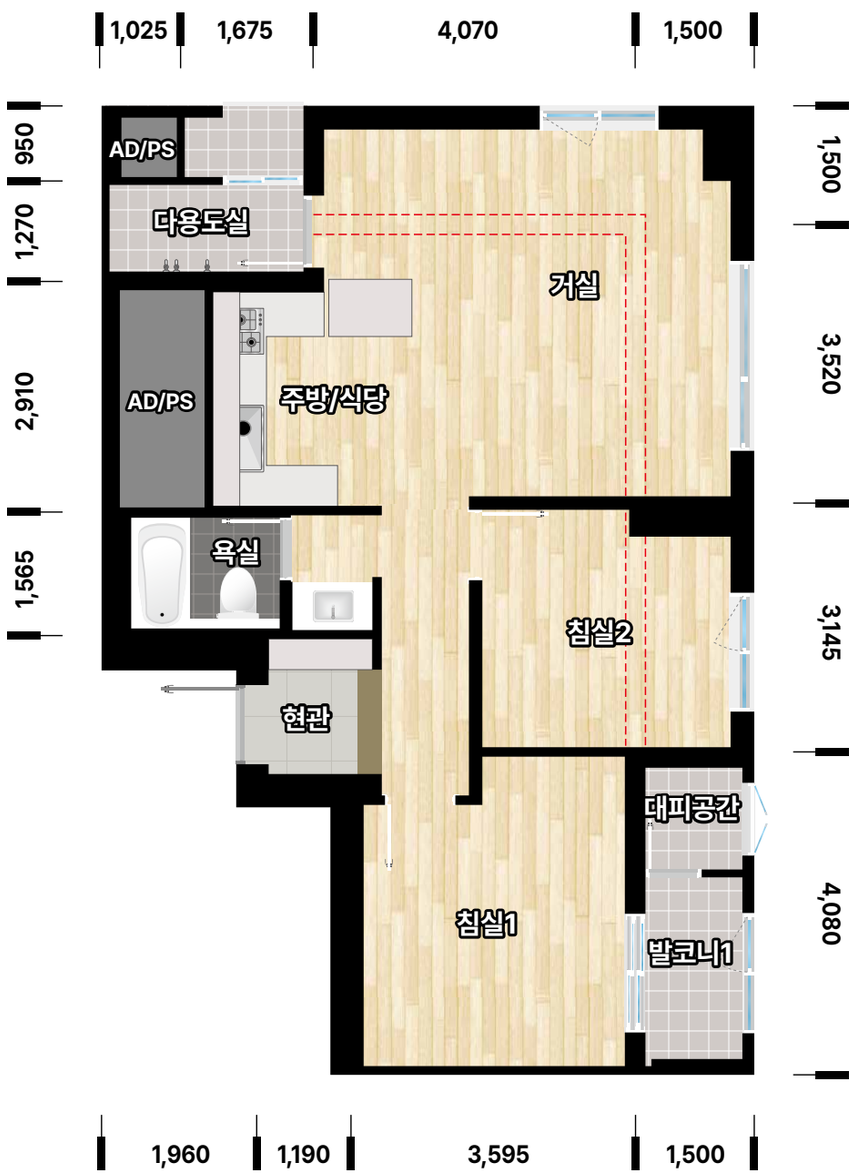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49G

14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49.98㎡	지하주차장	44.77㎡
주거공용면적	22.07㎡	계약면적	121.50㎡
기타공용면적	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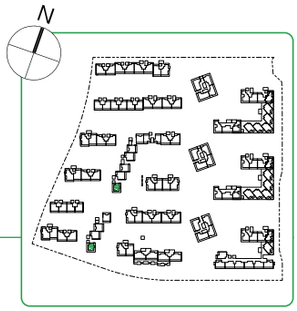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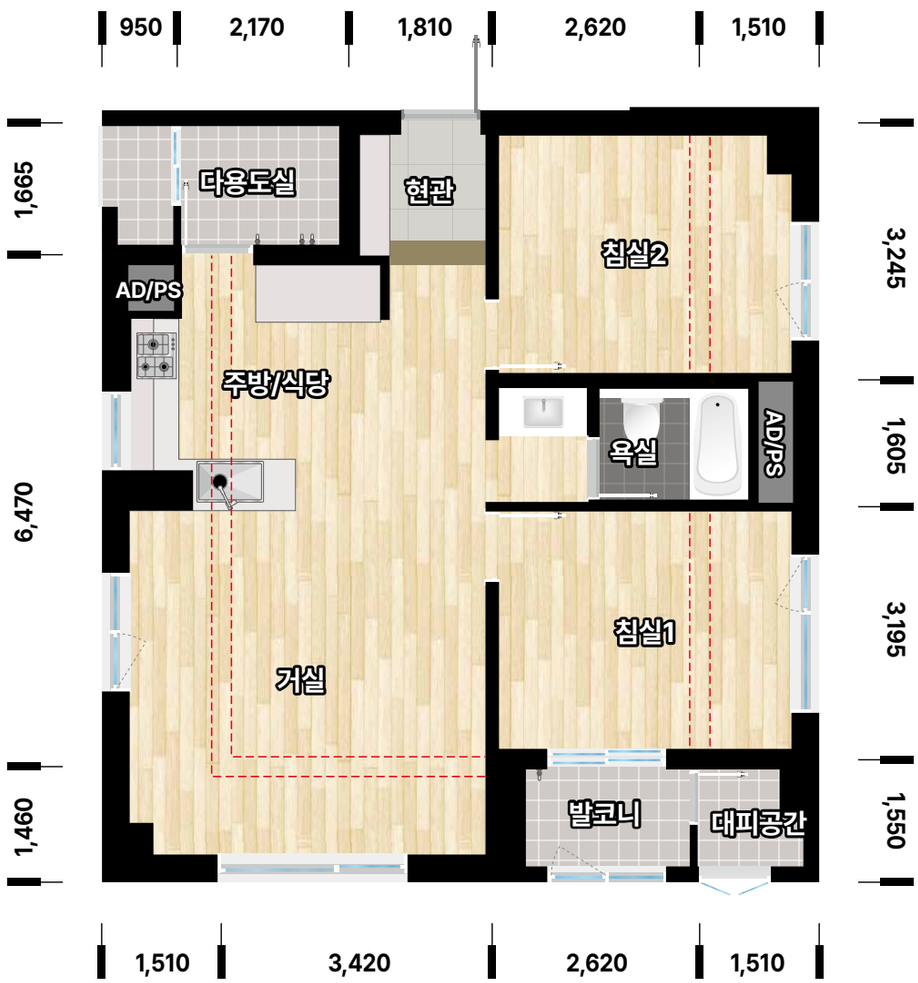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9H

74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49.97㎡	지하주차장	44.76㎡
주거공용면적	23.53㎡	계약면적	122.95㎡
기타공용면적	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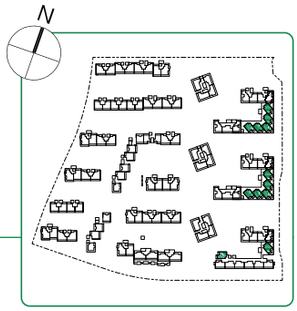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 본 타입 중 305동 1~3층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복도형으로 설계되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49Ⅰ

18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49.99㎡	지하주차장	44.78㎡
주거공용면적	23.27㎡	계약면적	122.73㎡
기타공용면적	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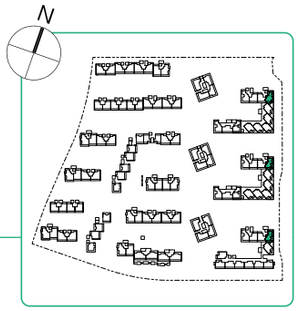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타입 중 305동 3층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복도형으로 설계되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49J

13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49.69㎡	지하주차장	44.51㎡
주거공용면적	22.69㎡	계 약 면 적	121.55㎡
기타공용면적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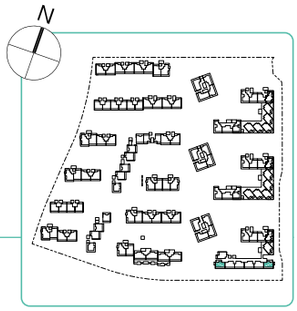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 본 타입 중 305동 1~3층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복도형으로 설계되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49K

26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49.77㎡	지하주차장	44.58㎡
주거공용면적	22.47㎡	계약면적	121.49㎡
기타공용면적	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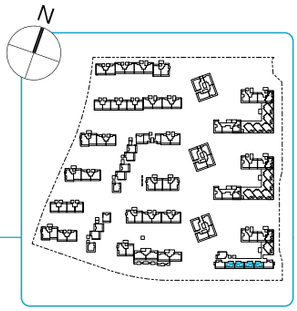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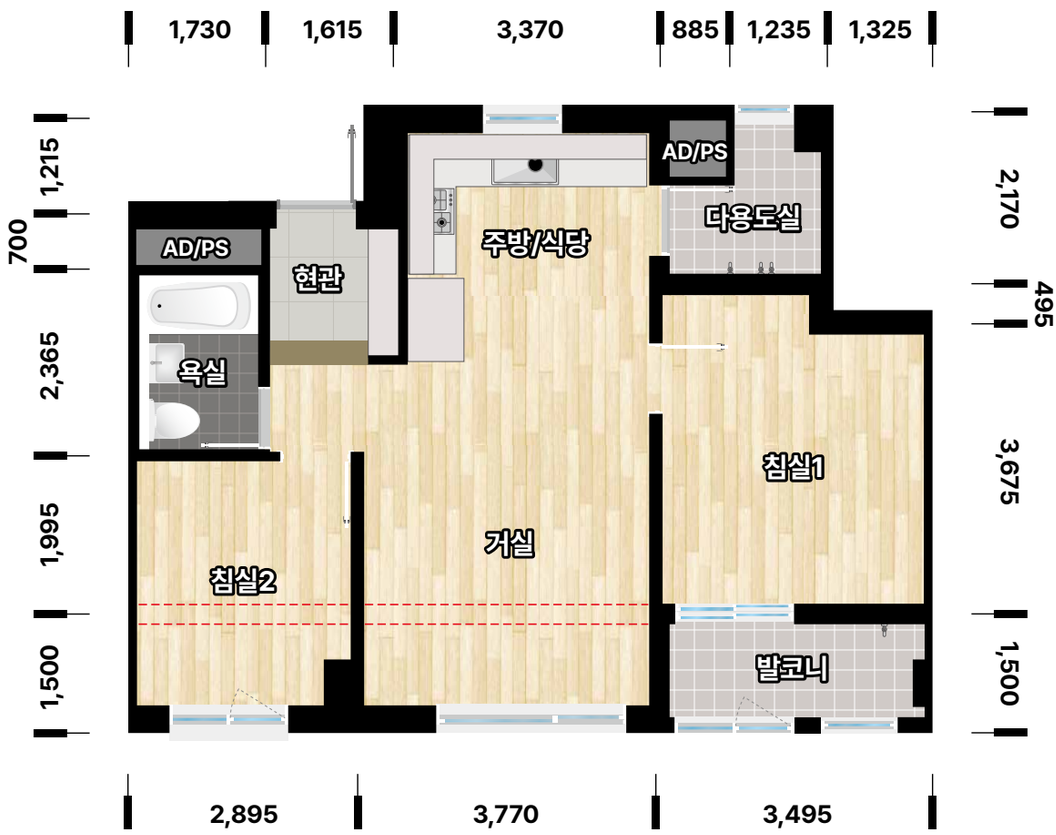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타입 중 305동 1~3층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복도형으로 설계되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59A

42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59.92㎡	지하주차장	53.67㎡
주거공용면적	26.62㎡	계약면적	145.83㎡
기타공용면적	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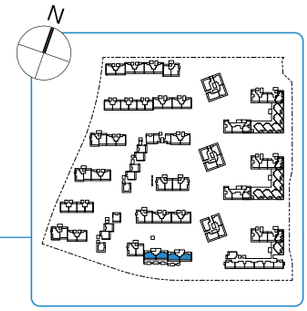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 본 타입 중 307동 303·304·305호에 해당하는 세대는 테라스 세대임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9B

107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59.97㎡	지하주차장	53.72㎡
주거공용면적	26.79㎡	계약면적	146.10㎡
기타공용면적	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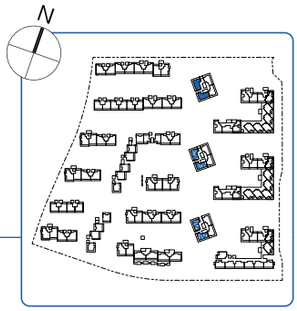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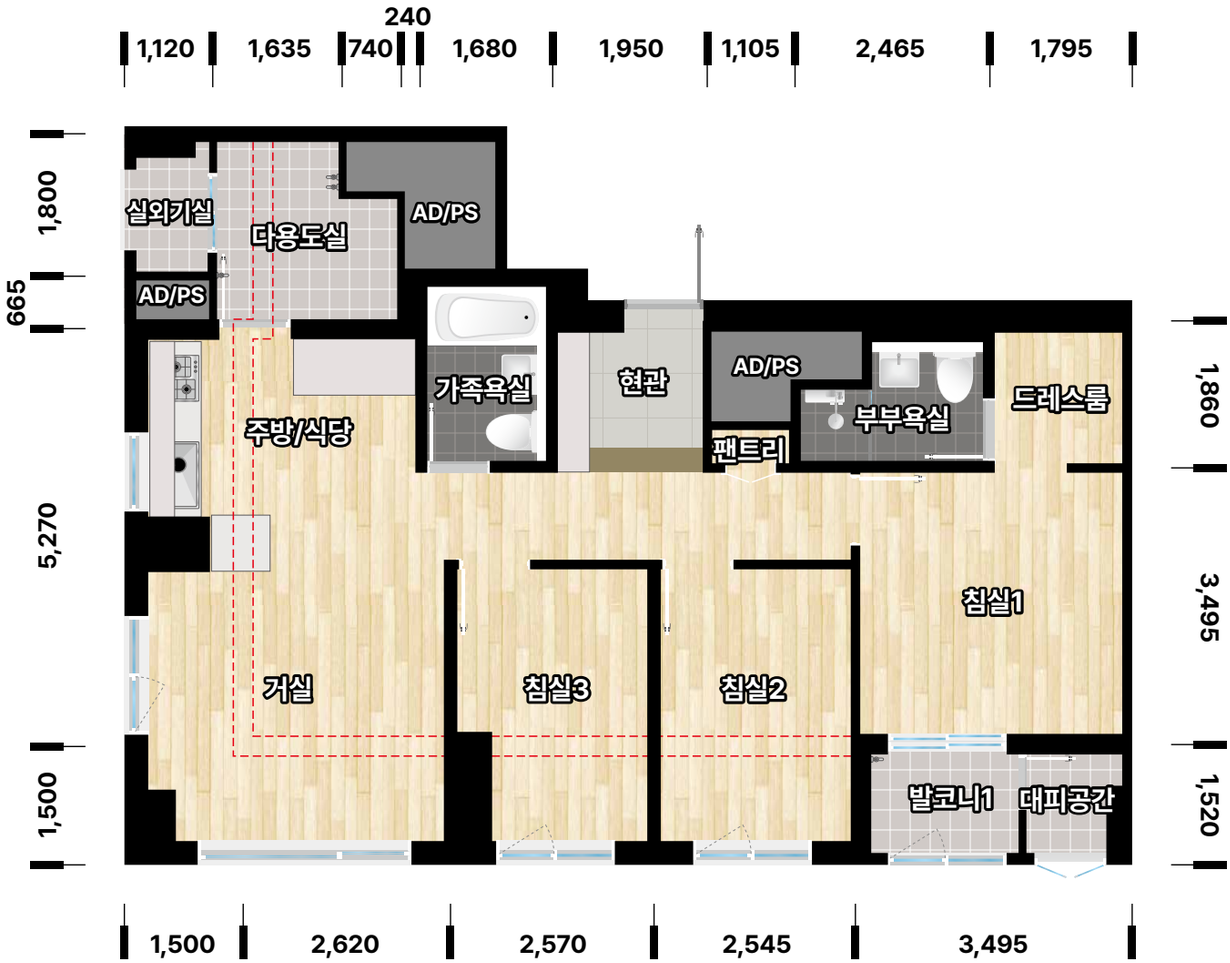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9C1

3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59.91㎡	지하주차장	53.66㎡
주거공용면적	27.28㎡	계약면적	146.47㎡
기타공용면적	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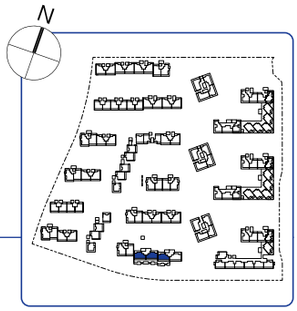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59C2

3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59.97㎡	지하주차장	53.72㎡
주거공용면적	27.18㎡	계약면적	146.49㎡
기타공용면적	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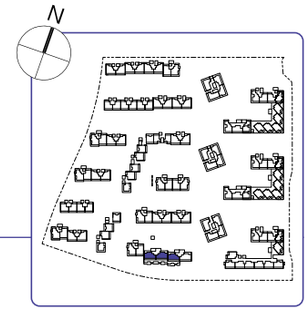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타입은 전 세대 테라스 세대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9D1

107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59.94㎡	지하주차장	53.69㎡
주거공용면적	27.25㎡	계약면적	146.50㎡
기타공용면적	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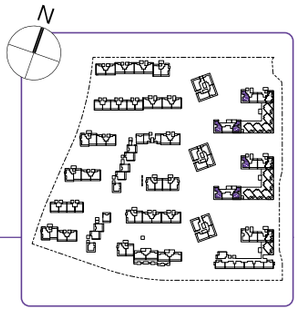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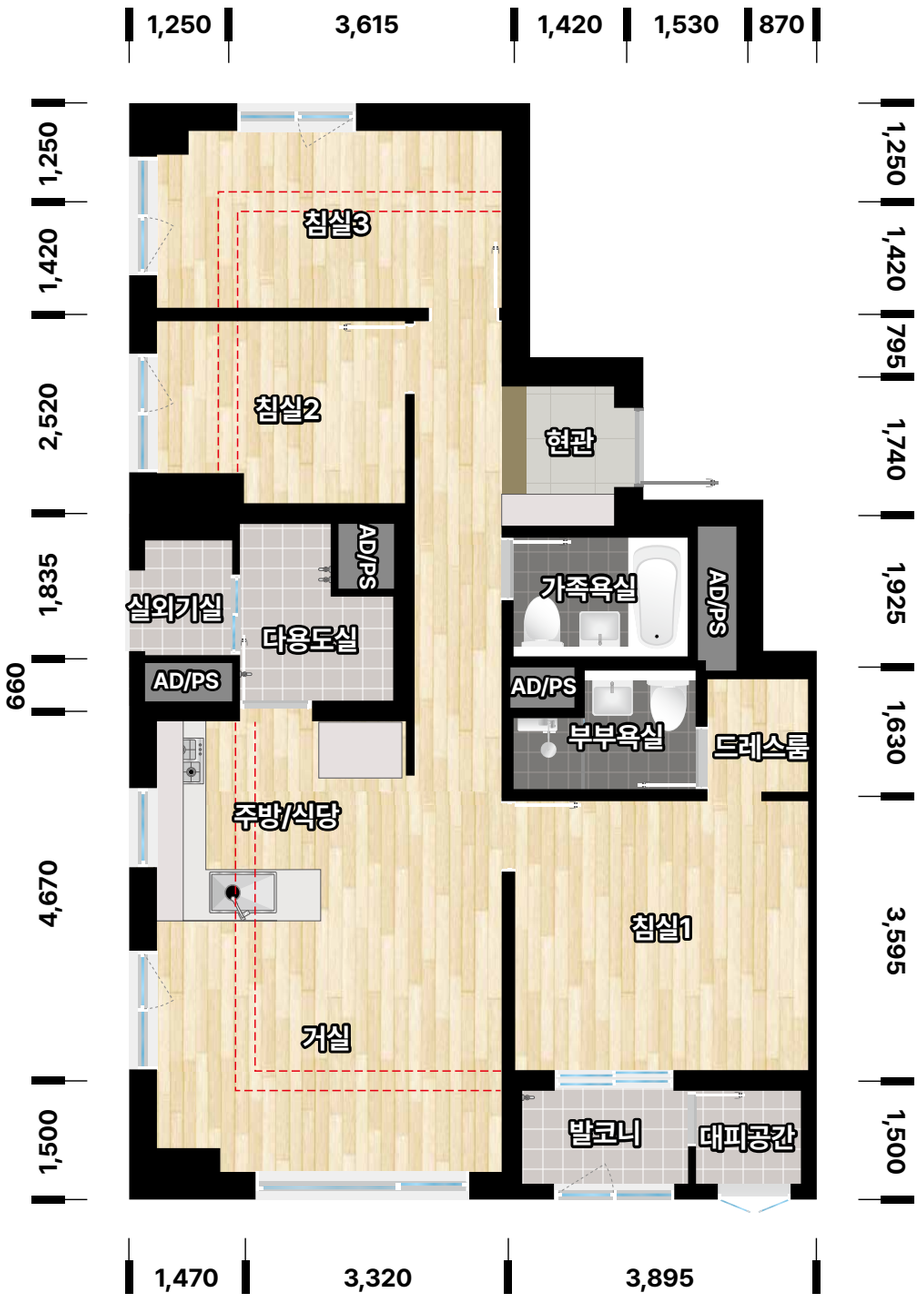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 본 타입 중 302동 3~8층, 304동 3~8층은 인접한 복도형 부분 세대들 사이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어 방화문 개방 시 복도형처럼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59D2

27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59.93㎡	지하주차장	53.68㎡
주거공용면적	27.25㎡	계약면적	146.49㎡
기타공용면적	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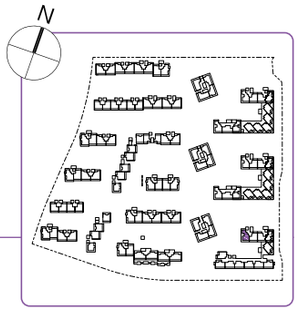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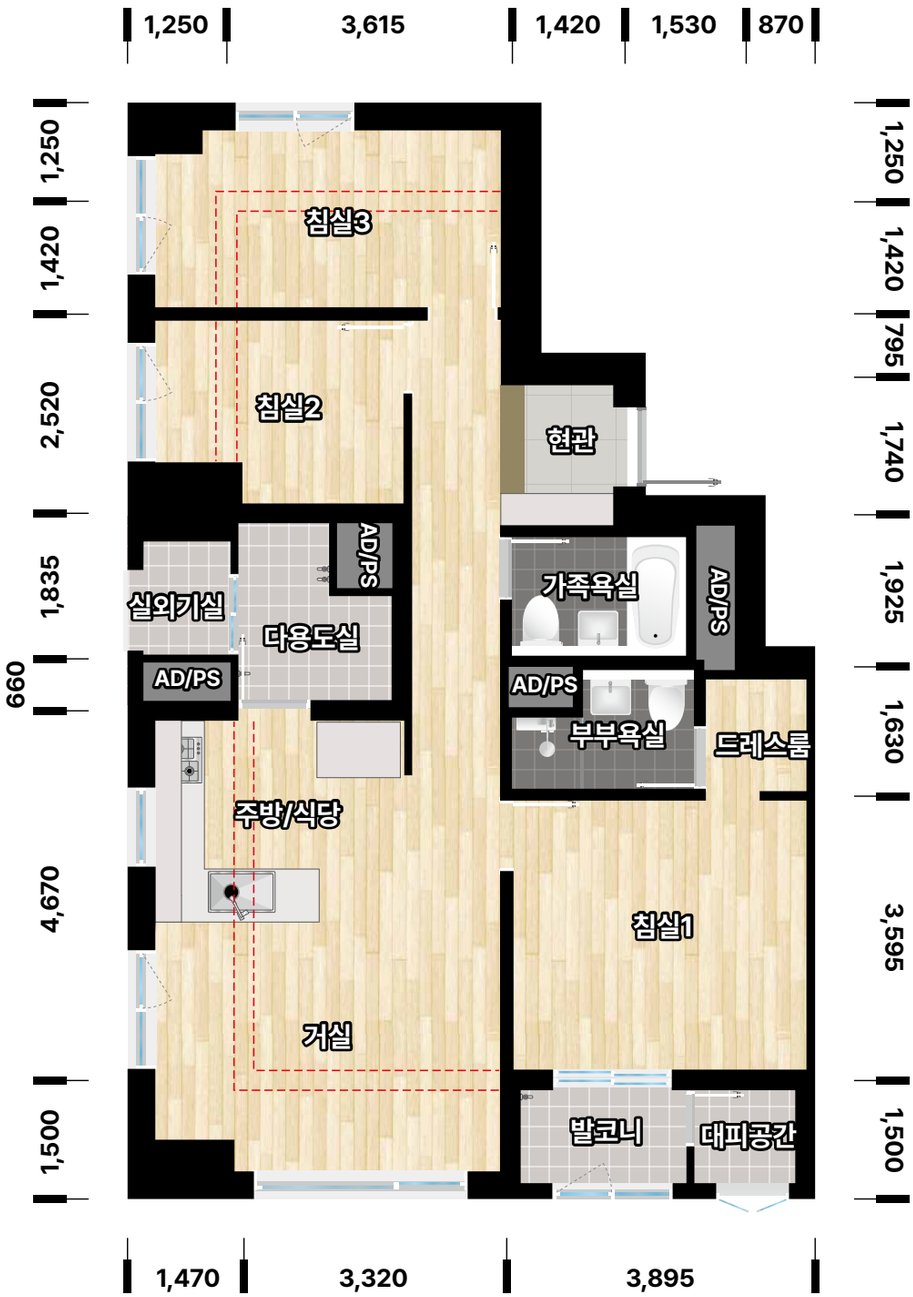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9E

78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59.98㎡	지하주차장	53.73㎡
주거공용면적	27.17㎡	계약면적	146.50㎡
기타공용면적	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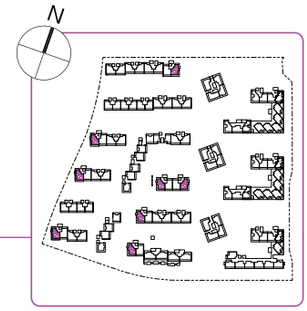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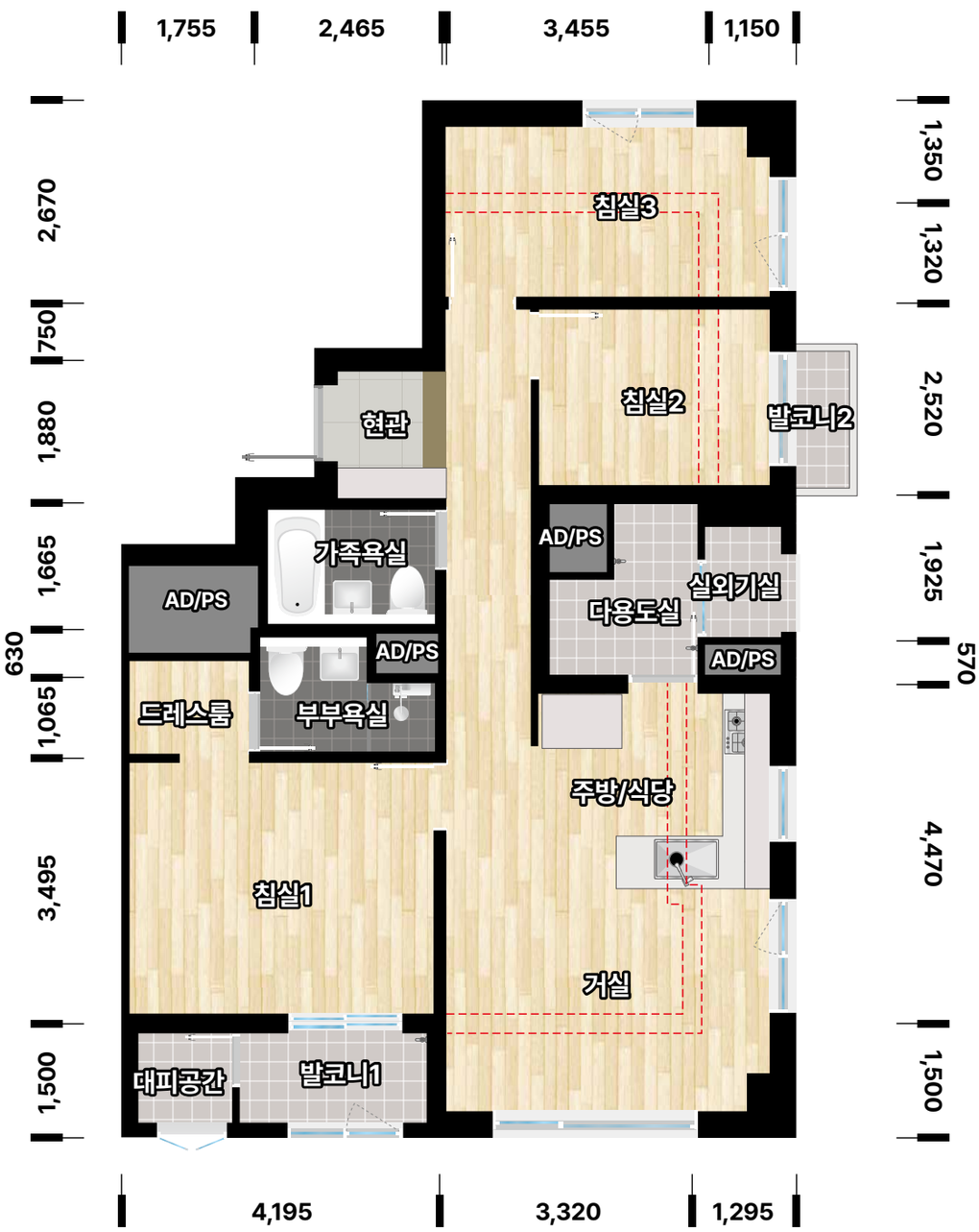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는 동·호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9F

81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59.97㎡	지하주차장	53.72㎡
주거공용면적	26.69㎡	계약면적	146.00㎡
기타공용면적	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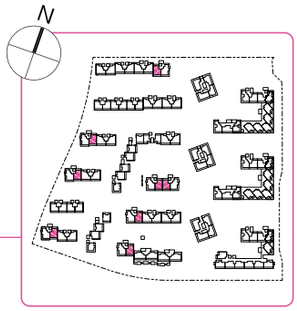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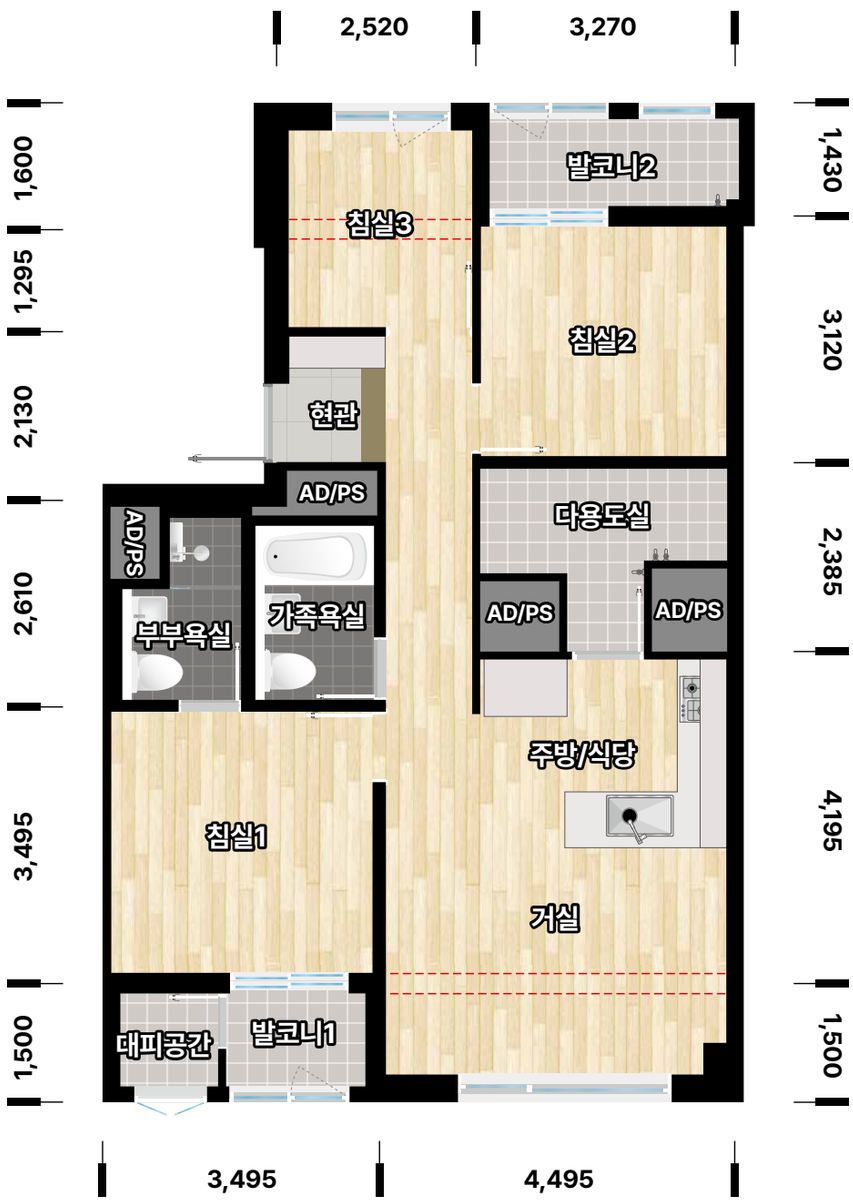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9G

213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59.70㎡	지하주차장	53.48㎡
주거공용면적	27.24㎡	계약면적	146.01㎡
기타공용면적	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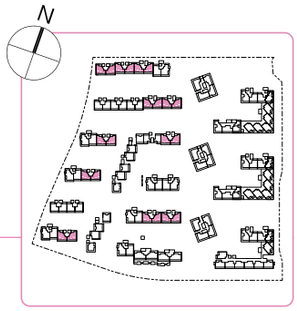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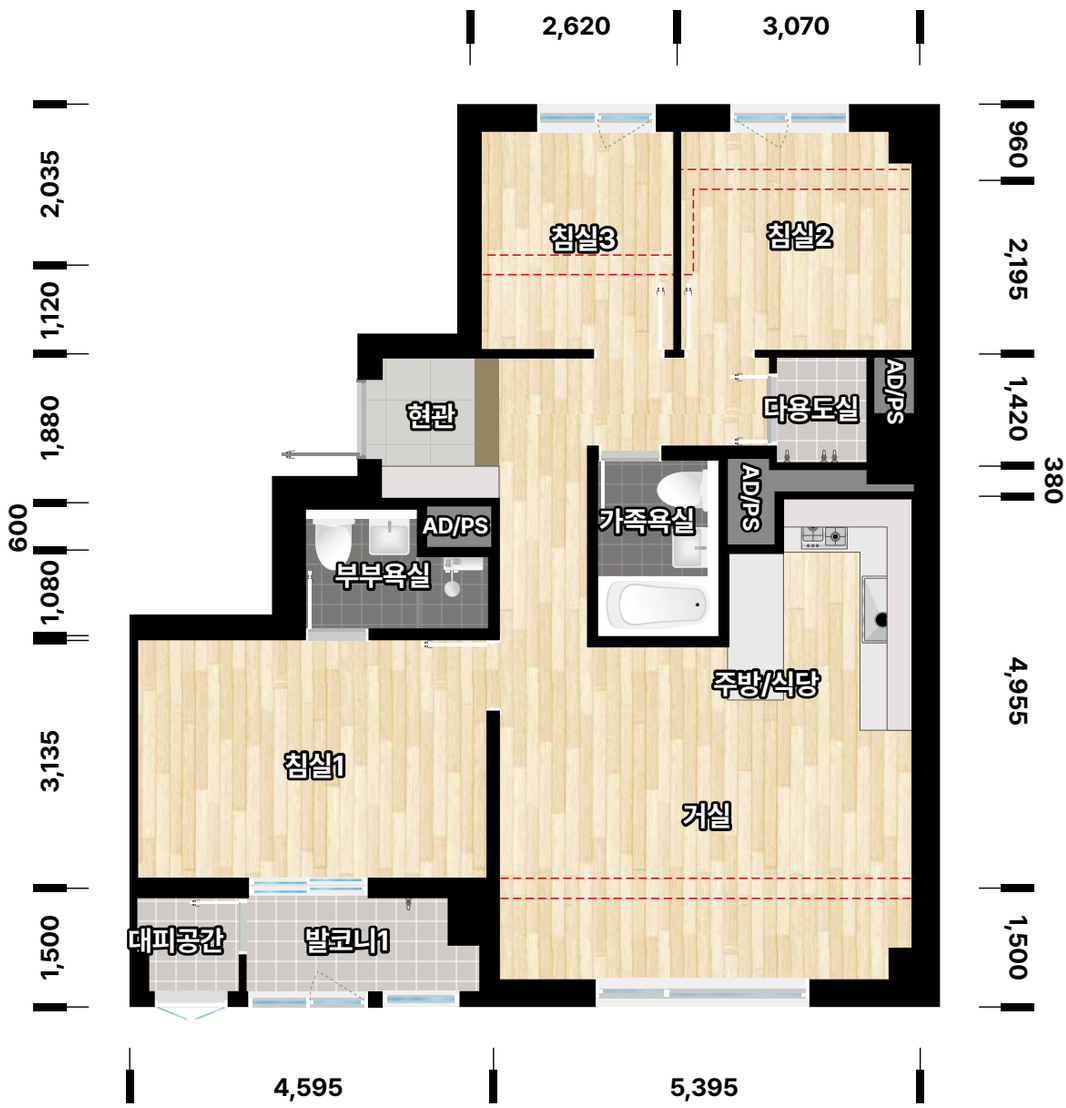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59H1

22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59.84㎡	지하주차장	53.60㎡
주거공용면적	26.72㎡	계약면적	145.77㎡
기타공용면적	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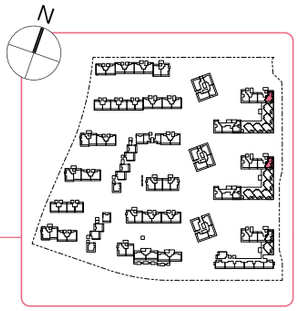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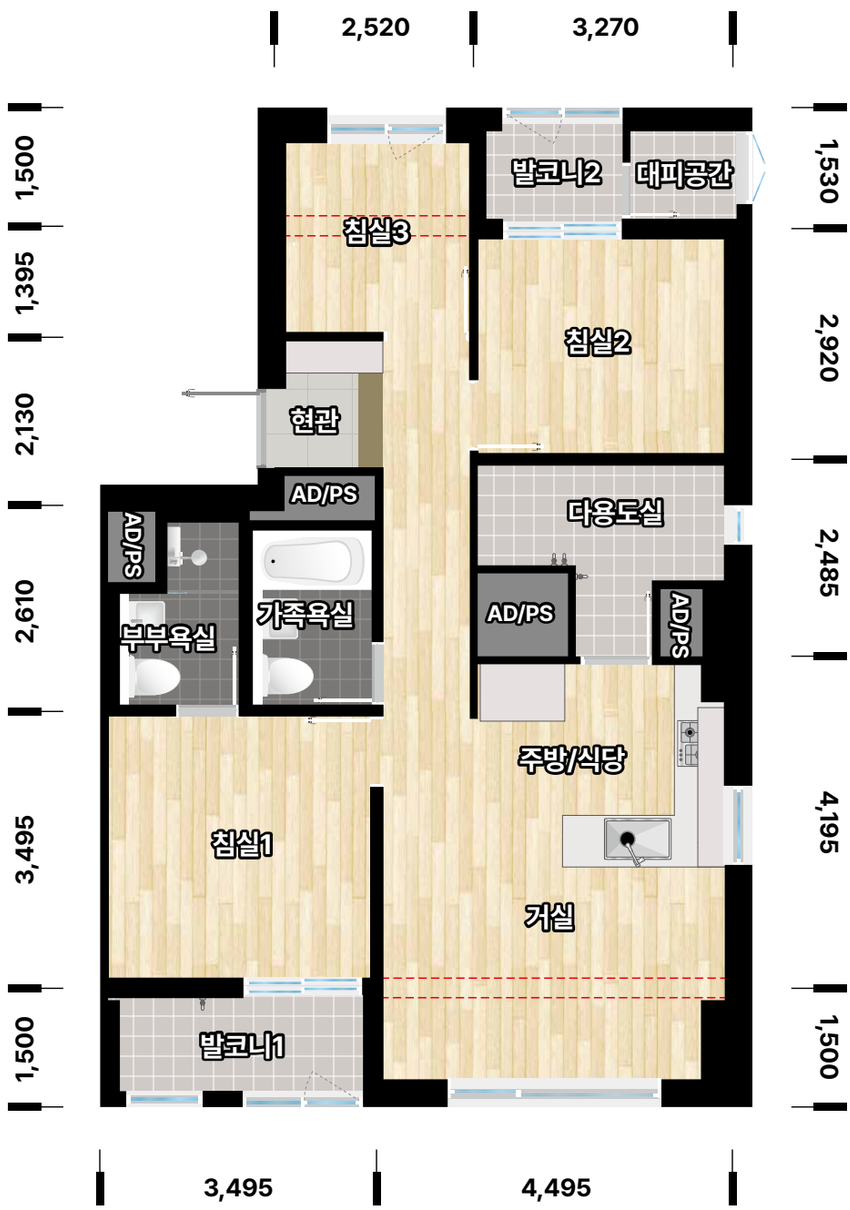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9H2

20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59.79㎡	지하주차장	53.56㎡
주거공용면적	26.75㎡	계약면적	145.71㎡
기타공용면적	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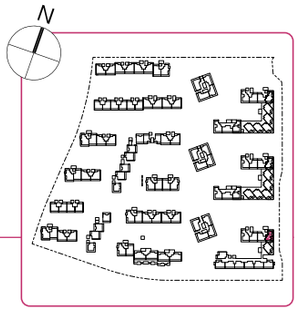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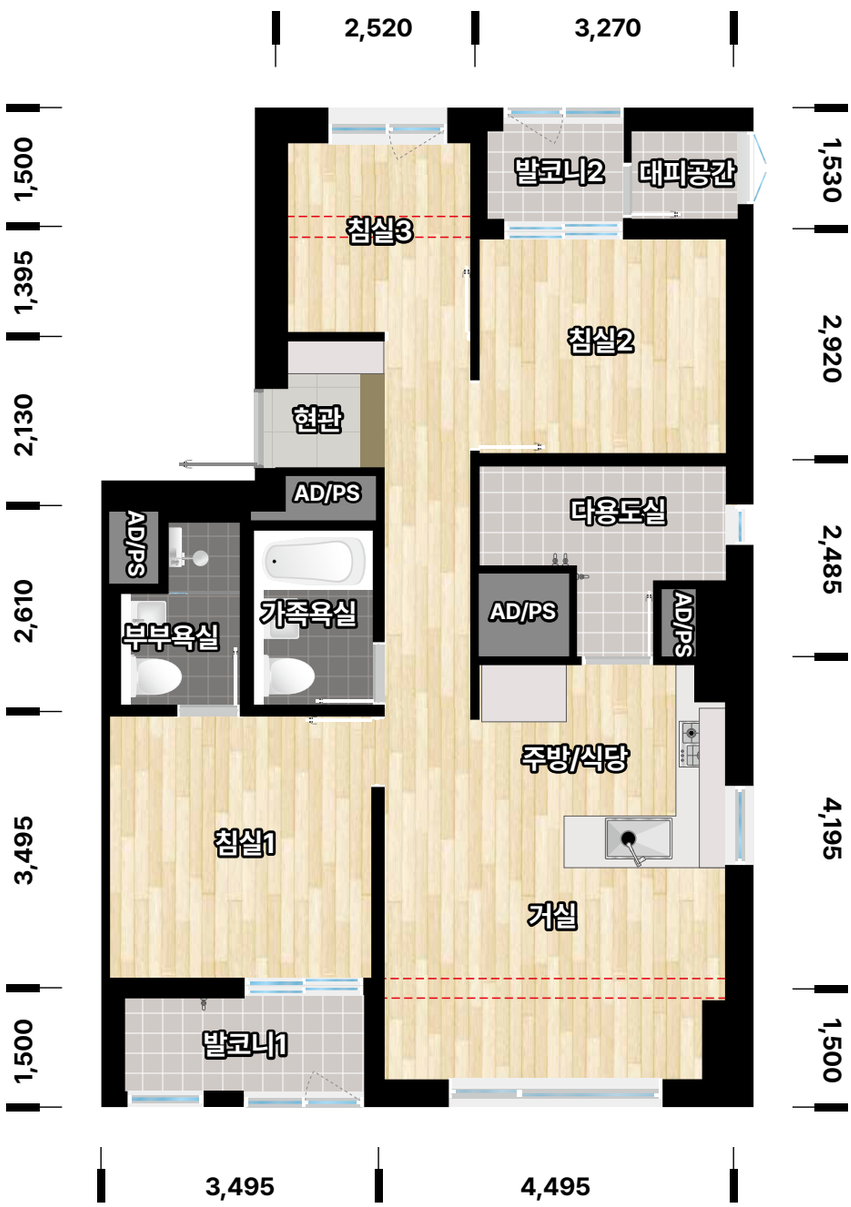

※ 상기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작성된 치수는 벽체 중심선 및 외곽선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추후 가구 반입 전에 반드시 내부 치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 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서 적색 점선 부분은 발코니 확장선이고, 적색 점선 바깥 부분은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59Ⅰ

12세대 [확장형]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59.99㎡	지하주차장	53.74㎡
주거공용면적	28.62㎡	계 약 면 적	147.98㎡
기타공용면적	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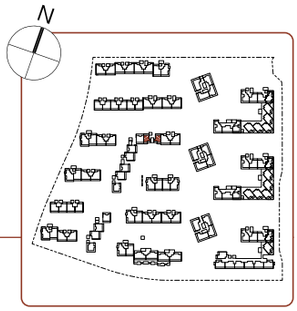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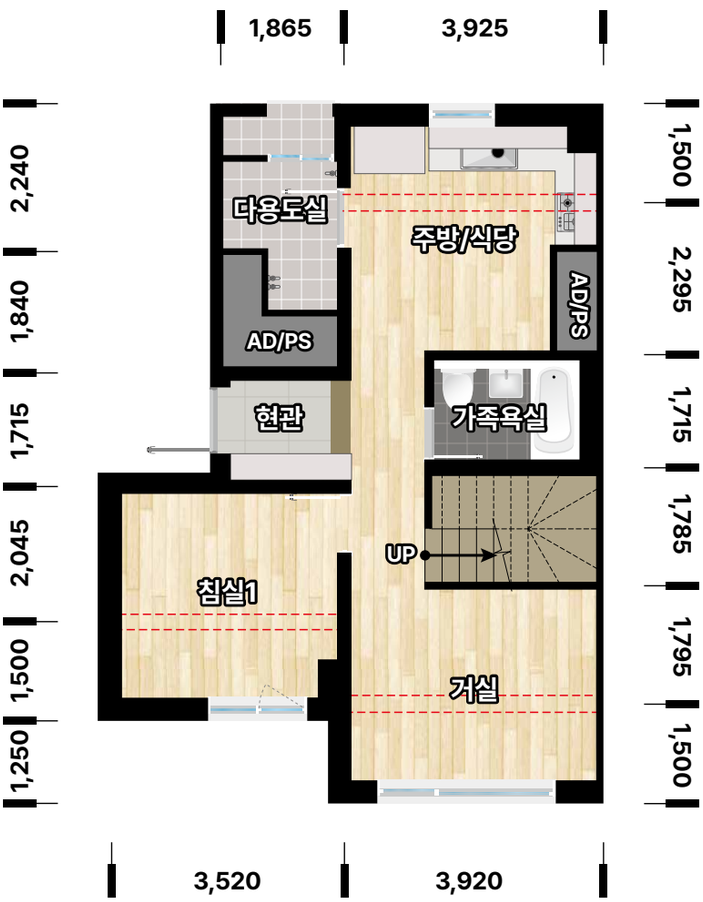

[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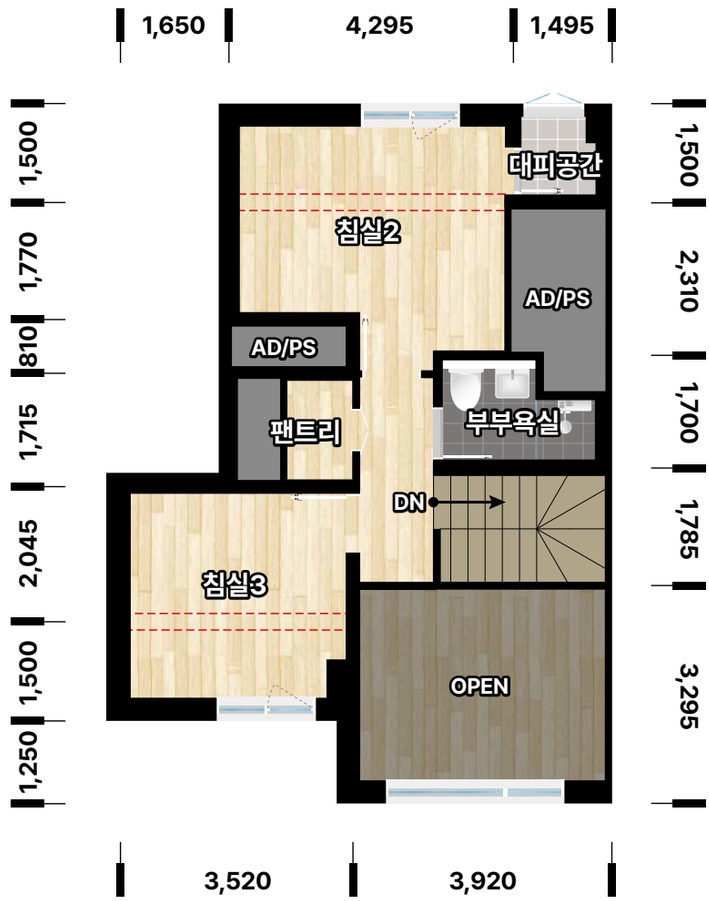

[상층]

※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으며 벽체의 두께는 구조 및 단열 설계상 동별·층별·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마감재(가구, 문짝, 창호, 타일, 도배지, 바닥재 등)의 디자인,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구현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에 표현된 발코니 창호의 규격, 위치, 개폐방향은 동일 평면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동·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타입은 전 세대 복층 세대로 설계되었음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 마감자재 목록

고덕강일지구 3단지				
구분	항목		전용49㎡	전용59㎡
현관	현관도어록		디지털형	디지털형
	세대현관문		분체도장급	분체도장급
	바닥		포셀린타일	포셀린타일
	마루귀틀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신발장		PET마감	PET마감
거실/주방	벽지/천장지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바닥		강화합판마루	강화합판마루
	거실아트월		포셀린타일	포셀린타일
	주방벽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주방가구	문짝	PET마감	PET마감
		상판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침실1	바닥		강화합판마루	강화합판마루
	벽지/천장지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침실 문틀/문짝		인테리어시트	인테리어시트
침실2,3	바닥		강화합판마루	강화합판마루
	벽지/천장지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침실 문틀/문짝		인테리어시트	인테리어시트
욕실	벽		도기질타일	도기질타일
	바닥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천장		SMC천장재	SMC천장재
주방설비	주방TV		설치	설치
	레인지후드		침니형(공용배기방식)	침니형(공용배기방식)
	가스쿡탑		3구(그릴미부착)	3구(그릴미부착)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설치	설치
	싱크수전		설치(바디터치형)	설치(바디터치형)

※ 마감자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덕강일지구 3단지			
구분	항목	전용49㎡	전용59㎡
욕실설비	세면기(가족욕실)	페데스탈일체형	페데스탈일체형
	세면기(부부욕실)	–	페데스탈일체형
	세면기(49C·F·G타입 욕실)	언더카운터형	–
	욕조(가족욕실)	세라믹	세라믹
	욕조수전(가족욕실)	싱글레버	싱글레버
	세면기 수전(가족,부부욕실)	싱글레버	싱글레버
	샤워수전(부부욕실)	–	레인형 샤워
	청소용수전세트(부부욕실)	–	미니건(청소용)
	양변기(가족욕실)	비데일체형	비데일체형
	양변기(부부욕실)	–	원피스형
	수건걸이	일반형	일반형
	휴지걸이	매립형	매립형
	코너선반(가족욕실)	유리형	유리형
	양변기청소솔	설치	설치
발코니	발코니수전	설치	설치
	손빨래수전, 세탁기수전(다용도실)	설치	설치
	창호	합성수지창호	합성수지창호
	천장/벽	내부수성페인트	내부수성페인트
	바닥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기본 에어컨 냉매배관		거실, 침실1 (49C타입: 침실2)	거실, 침실1 (59I타입: 침실2)
실별온도조절기		설치	설치
세대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강제환기)	전열교환기(강제환기)
난방시스템		지역난방	지역난방
조명설비	식탁등	LED	LED
	실별조명등	LED	LED
정보통신설비	월패드	설치	설치
기타			

※ 마감자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 안내

구분		일정	조회/신청장소	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		2026.10.16.(금)	•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견본주택 공개	사전청약 당첨자	2026.10.22.(목) ~ 2026.10.25.(일)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현장 (10:00 ~ 17:00)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당첨자의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사전청약 당첨자 이외	2026.10.24.(토) ~ 2026.10.25.(일)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신청		2026.10.26.(월) 10:00 ~ 2026.10.27.(화) 17:00	•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인터넷 신청은 야간에도 가능 • 공사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10:00~17:00) ※ 신청 시 주택타입도 선택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주택타입 배정결과 발표		2026.10.29.(목) 16:00	•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포기 신청		2026.10.30.(금) 10:00 ~ 17:00	•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인터넷 신청은 야간에도 가능 • 공사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10:00~17:00)
특별공급 청약신청	청년	2026.11.02.(월) 10:00 ~ 2026.11.03.(화) 17:00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일반공급 청약신청	1순위자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6.11.04.(수) 10:00 ~ 17:00		
	1순위자 (서울 2년 미만 거주자, 인천·경기 거주자)	2026.11.05.(목) 10:00 ~ 17:00		
	2순위자	2026.11.06.(금) 10:00 ~ 17:00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결과 발표		2026.11.26.(목) 16:00	•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당첨자 조회 • ARS 전화(1600-3456) → ④ → ② → 주민등록번호#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2026.11.30.(월) ~ 2026.12.09.(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해당자 직접 공사 방문 (10:00 ~ 17:00 운영)
최종당첨자 대상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2027.03.22.(월) ~ 2027.04.02.(금)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상세 장소 추후 안내	해당자 직접 공사 방문 (10:00 ~ 17:00 운영)
사전점검 실시		2027.04.03.(토) ~ 2027.04.04.(일)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현장	
입주 및 잔금 납부		2027.05.28.(금) ~ 2027.07.26.(월)	※ 추후 별도 안내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본 입주자모집공고(고덕강일지구 3단지, 2026.10.16.)의 주택 유형은
「주택법」 제2조제9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공급위치 및 대상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74 일원(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3단지) ▶ 공급대상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305세대(전용면적 49㎡ 590세대, 59㎡ 715세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에서는 콜센터(1600-3456)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시어 사전에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동일세대 내 2인 이상(부부 제외)이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 등)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청약홈, LH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 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며, 중복 당첨 시 발표일이 먼저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함)

이 공고문의 공급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9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서 토지의 소유권은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SH가 가지게 되고 토지 지상의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게 됩니다.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장기간 토지를 임대받게 되나 토지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실거주 및 전매제한기간 중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SH 홈페이지에 '변경공고'가 게시될 수 있으며 신청자께서는 청약 접수 전까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 대출 안내)** 본 주택은 사전청약 당첨자와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당첨된 자 모두 소득·자산, 주택가격 등과 관계없이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출심사를 거쳐 최대 5억원 한도(LTV 최대 80%, 만기 최장 40년, 고정금리 1.9~3.0% 등) 내에서 대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현행 기준 모든 전매행위(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불가합니다.

※ 잔금 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참고하시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16.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373이며,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및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관람 안내**

대 상	구 분	방문 일정	주 소	주 차	기 타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 관람 (일반고객 관람 불가)	'26.10.22.(목) ~ 10.23.(금) (10:00~17: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74 고덕강일지구 3단지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 관람 시 대기 발생 가능 문의 : ☎1600-3456
일반고객 (사전청약 당첨자 포함)	일반관람	'26.10.24.(토) ~ 10.25.(일) (10:00~17:00)			

-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견본주택을 **'26.10.22.(목) ~ 10.23.(금)(10:00~17:00) 2일간 사전공개**합니다. 주말 혼잡이 예상되오니, 사전청약 당첨자분들께서는 안내드린 일정에 맞춰 사전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 관람일에는 사전청약 당첨자만 관람 가능하며, 사전청약 당첨명부 확인 후 입장 가능 하오니 방문 시 **당첨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 현장 여건상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주변이 모두 주거 단지로 이루어져 있어 차량 정체 및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방지하고자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문 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차량 방문 시 인근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일부 주차 공간은 마련되어 있나,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전용 주차 공간 이용 시에는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또는 임산부 뱃지) 등 관련 증빙을 반드시 현장 요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 불가).
- **견본주택과 사이버 주택은 49C, 59G 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의 세대는 팸플릿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주소 :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왼쪽 하단의 '사이버 모델하우스' 〉 주택분양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견본주택 관람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물 건립 세대를 관람하지 못하고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 여건상 **견본주택에서는 청약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청약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콜센터(1600-3456) 전화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고	청약접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방문)	계약 (예정)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 (주택타입 선호순위 선택 포함)	주택타입 배정결과 발표	본청약 신청포기		해당지역 (서울시 2년 이상 거주)	기타지역 (서울시 2년 미만 거주, 수도권)				
2026. 10.16. (금)	10.26.(월) ~ 10.27.(화) (10:00 ~ 17:00)	10.29.(목) (16:00)	10.30.(금) (10:00 ~ 17:00)	11.02.(월)~ 11.03.(화) (10:00 ~ 17:00)	11.04.(수) (10:00 ~ 17:00)	11.05.(목) (10:00 ~ 17:00)	11.06.(금) (10:00 ~ 17:00)	11.26.(목) 16:00 이후	11.30.(월)~ 12.09.(수) (10:00 ~ 17:00)	2027. 03.22.(월)~ 04.02.(금) (10:00 ~ 17:00)

※ **청약접수**는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세 내용은 **1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은 본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에서 이루어지며, 상세 내용은 **1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 확인 및 준비사항

구 분	조회방법
청약통장 납입인정회차 및 인정금액 확인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청약제한사항 확인	**청약제한사항 :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 부적격자 1년 내 재당첨, 민간사전청약당첨 등**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거주지역 및 세대구성원 확인	정부24 접속(www.gov.kr)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검색
인터넷 청약신청을 위한 인증서 준비	인증서를 소지하고 SH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에 접속(www.i-sh.co.kr/app)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에도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모바일에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간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일부 인증서의 경우 시스템점검·오류 등으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두 개 이상의 인증서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안내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정의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9호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을 하는 SH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인 SH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다른 형태의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과는 그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소유자(SH)와 「주택법」 제78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40년 이내의 임대차기간(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주택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의하여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주택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적용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토지소유자(SH)는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순으로 적용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서, 「주택법」 제78조의2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서류(분양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S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S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제한기간 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S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합니다.
- 위의 경우 SH는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과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합니다.

■ 신청자격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청년의 경우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부부 제외)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표1〉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

구 분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순위자)	추첨공급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등	세대구성원	신청자 본인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세대구성원
세대주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과거 주택소유이력	세대구성원 (사전청약 공고일부터)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세대구성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주자저축	해당 없음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1순위자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저축액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	1순위자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가입
소득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월평균소득 140%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200% 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200% 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40%이하 (맞벌이 200% 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140% 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140% 이하)	(세대)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200% 이하)
총자산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276백만원 이하 (부모) 1,035백만원 이하	362백만원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합니다.

** **고덕강일지구 3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주택법」 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서, 1순위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제1호의 1순위 요건(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세대주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신고 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안내

-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이며, 그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기타 신청자격]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 ·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분양권 등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분양권 등의 매매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이 아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지구	단지	투기과열지구 여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지역우선 공급조건
고덕강일지구	3단지	○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

- **금회 공급하는 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25조, 제34조에 의거 신청자격별 〈지역우선 공급기준(84페이지)〉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지역별 거주자**(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거주기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 세대원일 경우 국내 거주 인정 불가)

▶ 국외 체류기간 적용 예시
- 사례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우선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역산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사례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 사례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

■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아래 기간만큼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 (~로부터)	기간	관련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의무	최초 입주가능일	5년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른 특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신청할 수 있으나, 당첨 후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

1.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했음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입주가 불가합니다.

-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전 신청자 및 배우자의 청약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시려는 분은 **청약 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 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됩니다. 또한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향후 혼인특례를 재사용 할 수 없으며,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기타사항

• 본 단지의 청약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한지 [모바일 → SH인터넷청약시스템 → 주택분양 → 청약신청 → 인터넷 청약(인증서 로그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자격의 적합 여부는 청약자의 당첨이 아닌 신청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인의 요건에 맞지 않게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됨

• 추후 계약 체결 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므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서면으로 변경 사실을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안내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 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 (다른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제한 및 부적격 당첨에 따른 청약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분이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 체결이 불가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1항제5호)	5년간

■ (다른 주택 당첨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은 49페이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른 특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전환 관련

-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10.15.)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됨

■ 그 외 유의사항

- **방문 접수 시의 혼잡 방지 및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심사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신청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등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급유형에 따라 신청일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전용면적 49㎡ 590세대, 59㎡ 715세대

- **사전청약 592세대, 특별공급 566세대, 일반공급 147세대**

※ 고덕강일지구 3단지의 총 건설호수는 1,305세대입니다.

2. 공급대상

지구 및 단지	주택형	주택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당 사용 대지 면적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발코니 유형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총계	사전청약 당첨자 계	본청약자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고덕강일지구 3단지	합계									1,305	592	713	106	106	106	248	147	29	44	
	049.0000A	49A		49.96	22.58	4.69	44.75	121.98	35.65	44	21	23	3	3	3	9	5	27	1	확장
	049.0000B	49B		49.97	22.59	4.69	44.76	122.01	35.66	15	7	8	1	1	1	3	2	8	1	
	049.0000C	49C	49C1	49.97	22.22	4.69	44.76	121.64	35.66	115	85	93	14	14	14	32	19	29	8	
			49C2	49.32	22.64	4.62	44.18	120.76	35.2	36								24	-	
			49C3	49.19	22.72	4.62	44.06	120.59	35.1	27								29	-	
	049.0000D	49D		49.96	22.25	4.69	44.75	121.65	35.65	24	11	13	2	2	2	4	3	10	1	
	049.0000E	49E		49.92	22.4	4.68	44.72	121.72	35.62	46	22	24	4	4	4	8	4	12	1	
	049.0000F	49F		49.95	22.69	4.68	44.74	122.06	35.65	138	66	72	11	11	11	25	14	29	-	
	049.0000G	49G		49.98	22.07	4.68	44.77	121.5	35.67	14	7	7	1	1	1	2	2	9	-	
	049.0000H	49H		49.97	23.53	4.69	44.76	122.95	35.66	74	35	39	6	6	6	13	8	8	1	
	049.0000I	49I		49.99	23.27	4.69	44.78	122.73	35.67	18	9	9	1	1	1	4	2	8	-	
	049.0000J	49J		49.69	22.69	4.66	44.51	121.55	35.46	13	6	7	1	1	1	2	2	8	1	
	049.0000K	49K		49.77	22.47	4.67	44.58	121.49	35.52	26	12	14	2	2	2	5	3	8	2	
	전용면적 49㎡ 계									590	281	309	46	46	46	107	64		16	
	059.0000A	59A		59.92	26.62	5.62	53.67	145.83	42.76	42	18	24	3	3	3	9	6	13	1	확장
	059.0000B	59B		59.97	26.79	5.62	53.72	146.1	42.8	107	47	60	9	9	9	21	12	29	-	
	059.0000C	59C	59C1	59.91	27.28	5.62	53.66	146.47	42.75	3	3	3	-	-	-	2	1	1	3	
			59C2	59.97	27.18	5.62	53.72	146.49	42.8	3								2	-	
	059.0000D	59D	59D1	59.94	27.25	5.62	53.69	146.5	42.77	107	58	76	11	11	11	27	16	27	1	
			59D2	59.93	27.25	5.63	53.68	146.49	42.77	27								29	-	
	059.0000E	59E		59.98	27.17	5.62	53.73	146.5	42.8	78	34	44	7	7	7	14	9	15	3	
	059.0000F	59F		59.97	26.69	5.62	53.72	146	42.8	81	35	46	7	7	7	16	9	15	6	
	059.0000G	59G		59.7	27.24	5.59	53.48	146.01	42.6	213	93	120	18	18	18	41	25	14	14	
	059.0000H	59H	59H1	59.84	26.72	5.61	53.6	145.77	42.7	22	18	24	4	4	4	8	4	24	-	
			59H2	59.79	26.75	5.61	53.56	145.71	42.67	20								29	-	
	059.0000I	59I		59.99	28.62	5.63	53.74	147.98	42.81	12	5	7	1	1	1	3	1	12	-	
	전용면적 59㎡ 계									715	311	404	60	60	60	141	83		28	

※ 주택관리번호 : 2026000373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면적 등 실주거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또는 팸플릿 내 동호수배치도(10~14페이지), 주택타입별 평면도(15~39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타입 및 공급유형별로 할당된 물량 내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부 물량(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공급 등)을 배분하기 때문에 세부 물량의 개수는 반드시 전체 물량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공급유형별 세부 물량 배분비율 참고).

※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 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타입)별로 하여야 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 시 제출한 주택타입 선호순위를 바탕으로 우리 공사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주택타입을 배정한 후, 동·층·향·측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가 결정됩니다.

※ (본청약자) 청약 시 제출한 주택타입 내에서 동·층·향·측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가 결정됩니다.

※ **같은 주택타입(예: 49C)이라도 세부타입(예: 49C1, 49C2, 49C3)이 구분되는 주택타입이 있으며, 이 경우 세부타입의 대표타입(예: 49C)에 대해서만 주택타입 선호순위를 작성하거나(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본청약자), 세부타입은 신청한 대표타입 내에서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건축 공정률 90%를 초과한 후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마이너스옵션제 등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의 미신청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며, 사전청약 당첨자의 접수 결과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택형'의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며,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입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동·호수는 10~14페이지의 동호수배치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가격

■ 건물분양가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 향 등에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실제 층고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 하기 금액에는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되며, 분양가는 타입·층·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동·호 배치도(10~14페이지), 평면도 및 면적(15~39페이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1	201	059.0000B	59B	371,544	37,154	334,390	5,825,600
301	202	059.0000B	59B	363,961	36,396	327,565	5,825,600
301	203	049.0000F	49F	301,842	30,184	271,658	2,506,900
301	204	049.0000F	49F	301,842	30,184	271,658	2,506,900
301	301	059.0000B	59B	379,126	37,913	341,213	5,825,600
301	302	059.0000B	59B	371,544	37,154	334,390	5,825,600
301	303	049.0000F	49F	301,842	30,184	271,658	2,506,900
301	304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1	401	059.0000B	59B	379,126	37,913	341,213	5,825,600
301	402	059.0000B	59B	371,544	37,154	334,390	5,825,600
301	403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1	404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1	501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1	502	059.0000B	59B	379,126	37,913	341,213	5,825,600
301	503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1	504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1	601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1	602	059.0000B	59B	379,126	37,913	341,213	5,825,600
301	603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1	604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1	701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1	702	059.0000B	59B	379,126	37,913	341,213	5,825,600
301	703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1	704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1	801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1	802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1	8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1	8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901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1	902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1	9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1	9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1001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1	1002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1	10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10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1102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1	11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11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1202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1	12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12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1302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1	13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13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1402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1	14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14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1502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1	15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15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16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1	16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16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17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1	17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17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18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1	18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18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19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1	19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19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20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1	20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1	20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21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1	21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1	21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2	101	059.0000D	59D1	356,379	35,638	320,741	6,647,300
302	102	049.0000A	49A	289,522	28,952	260,570	987,800
302	103	049.0000B	49B	289,522	28,952	260,570	1,342,000
302	201	059.0000D	59D1	363,961	36,396	327,565	6,647,300
302	202	049.0000A	49A	295,682	29,568	266,114	987,800
302	203	049.0000B	49B	295,682	29,568	266,114	1,342,000
302	301	059.0000D	59D1	371,538	37,154	334,384	6,647,300
302	302	049.0000A	49A	295,682	29,568	266,114	987,800
302	303	049.0000B	49B	301,842	30,184	271,658	1,342,000
302	304	049.0000H	49H	283,361	28,336	255,025	506,000
302	305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2	306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2	307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2	308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2	309	049.0000I	49I	301,842	30,184	271,658	1,292,500
302	311	049.0000C	49C2	295,682	29,568	266,114	1,402,500
302	312	059.0000D	59D1	363,961	36,396	327,565	6,647,300
302	401	059.0000D	59D1	371,538	37,154	334,384	6,647,300
302	402	049.0000A	49A	295,682	29,568	266,114	987,800
302	403	049.0000B	49B	301,842	30,184	271,658	1,342,000
302	404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2	405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2	406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2	407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2	408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2	409	049.0000I	49I	308,002	30,800	277,202	1,292,500
302	411	049.0000C	49C2	295,682	29,568	266,114	1,402,500
302	412	059.0000D	59D1	371,538	37,154	334,384	6,647,300
302	501	059.0000D	59D1	379,126	37,913	341,213	6,647,300
302	502	049.0000A	49A	301,842	30,184	271,658	987,800
302	503	049.0000B	49B	301,842	30,184	271,658	1,342,000
302	504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2	505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2	506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2	507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2	508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2	509	049.0000I	49I	308,002	30,800	277,202	1,292,500
302	511	049.0000C	49C2	301,842	30,184	271,658	1,402,500
302	512	059.0000D	59D1	371,538	37,154	334,384	6,647,300
302	601	059.0000D	59D1	379,126	37,913	341,213	6,647,300
302	602	049.0000A	49A	301,842	30,184	271,658	987,800
302	603	049.0000B	49B	308,002	30,800	277,202	1,342,0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2	604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2	605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2	606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2	607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2	608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2	609	049.0000I	49I	308,002	30,800	277,202	1,292,500
302	611	049.0000C	49C2	301,842	30,184	271,658	1,402,500
302	612	059.0000D	59D1	379,126	37,913	341,213	6,647,300
302	701	059.0000D	59D1	379,126	37,913	341,213	6,647,300
302	702	049.0000A	49A	301,842	30,184	271,658	987,800
302	703	049.0000B	49B	308,002	30,800	277,202	1,342,000
302	704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2	705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2	706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2	707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2	708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2	709	049.0000I	49I	314,162	31,416	282,746	1,292,500
302	711	049.0000C	49C2	301,842	30,184	271,658	1,402,500
302	712	059.0000D	59D1	379,126	37,913	341,213	6,647,300
302	801	059.0000D	59D1	379,126	37,913	341,213	6,647,300
302	802	049.0000A	49A	301,842	30,184	271,658	987,800
302	803	049.0000B	49B	308,002	30,800	277,202	1,342,000
302	804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2	805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2	806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2	807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2	808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2	809	049.0000I	49I	314,162	31,416	282,746	1,292,500
302	811	049.0000C	49C2	301,842	30,184	271,658	1,402,500
302	812	059.0000D	59D1	379,126	37,913	341,213	6,647,300
302	9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9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2	911	049.0000C	49C2	301,842	30,184	271,658	1,402,500
302	912	059.0000D	59D1	379,126	37,913	341,213	6,647,300
302	10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0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2	1003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0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2	10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2	1011	049.0000C	49C2	308,002	30,800	277,202	1,402,500
302	10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1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1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2	1103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1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2	11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2	1111	049.0000C	49C2	314,162	31,416	282,746	1,402,500
302	11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2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2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2	1203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2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2	12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2	1211	049.0000C	49C2	314,162	31,416	282,746	1,402,500
302	12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3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3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2	1303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3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2	13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2	1311	049.0000C	49C2	314,162	31,416	282,746	1,402,500
302	13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4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4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2	1403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4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2	14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2	1411	049.0000C	49C2	314,162	31,416	282,746	1,402,500
302	14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5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5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2	1503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5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2	15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2	1511	049.0000C	49C2	314,162	31,416	282,746	1,402,500
302	15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6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6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2	1603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6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2	16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2	1611	049.0000C	49C2	314,162	31,416	282,746	1,402,500
302	16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7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7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2	1703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8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2	18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2	1803	059.0000D	59D1	390,500	39,050	351,450	6,647,300
303	201	059.0000B	59B	363,961	36,396	327,565	5,825,600
303	202	059.0000B	59B	371,544	37,154	334,390	5,825,600
303	203	049.0000F	49F	295,682	29,568	266,114	2,506,9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3	204	049.0000F	49F	295,682	29,568	266,114	2,506,900
303	301	059.0000B	59B	371,544	37,154	334,390	5,825,600
303	302	059.0000B	59B	371,544	37,154	334,390	5,825,600
303	303	049.0000F	49F	301,842	30,184	271,658	2,506,900
303	304	049.0000F	49F	301,842	30,184	271,658	2,506,900
303	401	059.0000B	59B	371,544	37,154	334,390	5,825,600
303	402	059.0000B	59B	379,126	37,913	341,213	5,825,600
303	403	049.0000F	49F	301,842	30,184	271,658	2,506,900
303	404	049.0000F	49F	301,842	30,184	271,658	2,506,900
303	501	059.0000B	59B	379,126	37,913	341,213	5,825,600
303	502	059.0000B	59B	379,126	37,913	341,213	5,825,600
303	503	049.0000F	49F	301,842	30,184	271,658	2,506,900
303	504	049.0000F	49F	301,842	30,184	271,658	2,506,900
303	601	059.0000B	59B	379,126	37,913	341,213	5,825,600
303	602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3	603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3	604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3	701	059.0000B	59B	379,126	37,913	341,213	5,825,600
303	702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3	703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3	704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3	801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3	802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3	803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3	804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3	901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3	902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3	903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3	904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3	1001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3	10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3	10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3	1004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3	1101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3	11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3	11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3	1104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3	1201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3	12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3	12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3	1204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3	1301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3	13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3	13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3	1304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3	1401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3	14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3	14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3	1404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3	15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3	15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3	1504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3	16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3	16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3	1604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3	17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3	17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3	1704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3	18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3	18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3	18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3	19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3	19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3	19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3	20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3	20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3	20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3	21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3	21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3	21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3	22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3	22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3	22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4	201	059.0000D	59D1	363,961	36,396	327,565	6,647,300
304	202	049.0000A	49A	295,682	29,568	266,114	987,800
304	203	049.0000B	49B	295,682	29,568	266,114	1,342,000
304	301	059.0000D	59D1	371,538	37,154	334,384	6,647,300
304	302	049.0000A	49A	295,682	29,568	266,114	987,800
304	303	049.0000B	49B	301,842	30,184	271,658	1,342,000
304	304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4	305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4	306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4	307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4	308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4	309	049.0000I	49I	301,842	30,184	271,658	1,292,500
304	311	049.0000C	49C2	295,682	29,568	266,114	1,402,500
304	312	059.0000D	59D1	363,961	36,396	327,565	6,647,300
304	401	059.0000D	59D1	371,538	37,154	334,384	6,647,300
304	402	049.0000A	49A	295,682	29,568	266,114	987,800
304	403	049.0000B	49B	301,842	30,184	271,658	1,342,000
304	404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4	405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4	406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4	407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4	408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4	409	049.0000I	49I	308,002	30,800	277,202	1,292,500
304	411	049.0000C	49C2	295,682	29,568	266,114	1,402,500
304	412	059.0000D	59D1	371,538	37,154	334,384	6,647,300
304	501	059.0000D	59D1	379,126	37,913	341,213	6,647,300
304	502	049.0000A	49A	301,842	30,184	271,658	987,800
304	503	049.0000B	49B	301,842	30,184	271,658	1,342,000
304	504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4	505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4	506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4	507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4	508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4	509	049.0000I	49I	308,002	30,800	277,202	1,292,500
304	511	049.0000C	49C2	301,842	30,184	271,658	1,402,500
304	512	059.0000D	59D1	371,538	37,154	334,384	6,647,300
304	601	059.0000D	59D1	379,126	37,913	341,213	6,647,300
304	602	049.0000A	49A	301,842	30,184	271,658	987,800
304	603	049.0000B	49B	308,002	30,800	277,202	1,342,000
304	604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4	605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4	606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4	607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4	608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4	609	049.0000I	49I	308,002	30,800	277,202	1,292,500
304	611	049.0000C	49C2	301,842	30,184	271,658	1,402,500
304	612	059.0000D	59D1	379,126	37,913	341,213	6,647,300
304	701	059.0000D	59D1	379,126	37,913	341,213	6,647,300
304	702	049.0000A	49A	301,842	30,184	271,658	987,800
304	703	049.0000B	49B	308,002	30,800	277,202	1,342,000
304	704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4	705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4	706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4	707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4	708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4	709	049.0000I	49I	314,162	31,416	282,746	1,292,500
304	711	049.0000C	49C2	301,842	30,184	271,658	1,402,500
304	712	059.0000D	59D1	379,126	37,913	341,213	6,647,300
304	801	059.0000D	59D1	379,126	37,913	341,213	6,647,300
304	802	049.0000A	49A	301,842	30,184	271,658	987,800
304	803	049.0000B	49B	308,002	30,800	277,202	1,342,000
304	804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4	805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4	806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4	807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4	808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4	809	049.0000I	49I	314,162	31,416	282,746	1,292,500
304	811	049.0000C	49C2	301,842	30,184	271,658	1,402,500
304	812	059.0000D	59D1	379,126	37,913	341,213	6,647,300
304	9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9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4	911	049.0000C	49C2	301,842	30,184	271,658	1,402,500
304	912	059.0000D	59D1	379,126	37,913	341,213	6,647,300
304	10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0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4	1003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0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4	1010	049.0000C	49C1	308,002	30,800	277,202	1,465,200
304	1011	049.0000C	49C2	308,002	30,800	277,202	1,402,500
304	10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1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1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4	1103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1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4	1110	049.0000C	49C1	308,002	30,800	277,202	1,465,200
304	1111	049.0000C	49C2	308,002	30,800	277,202	1,402,500
304	11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2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2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4	1203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2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4	12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4	1211	049.0000C	49C2	308,002	30,800	277,202	1,402,500
304	12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3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3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4	1303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3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4	13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4	1311	049.0000C	49C2	314,162	31,416	282,746	1,402,500
304	13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4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4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4	1403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4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4	14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4	1411	049.0000C	49C2	314,162	31,416	282,746	1,402,500
304	14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5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5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4	1503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4	15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4	15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4	1511	049.0000C	49C2	314,162	31,416	282,746	1,402,500
304	15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6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6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4	1603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6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4	16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4	1611	049.0000C	49C2	314,162	31,416	282,746	1,402,500
304	16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7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7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4	1703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7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4	17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4	1711	049.0000C	49C2	314,162	31,416	282,746	1,402,500
304	17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8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8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4	1803	059.0000D	59D1	390,500	39,050	351,450	6,647,300
304	18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4	18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4	1811	049.0000C	49C2	314,162	31,416	282,746	1,402,500
304	18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9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19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4	1903	059.0000D	59D1	390,500	39,050	351,450	6,647,300
304	19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4	19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4	1911	049.0000C	49C2	314,162	31,416	282,746	1,402,500
304	19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20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20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4	2003	059.0000D	59D1	390,500	39,050	351,450	6,647,300
304	20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4	20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4	2011	049.0000C	49C2	314,162	31,416	282,746	1,402,500
304	20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21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21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4	2103	059.0000D	59D1	390,500	39,050	351,450	6,647,300
304	21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4	21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4	2111	049.0000C	49C2	314,162	31,416	282,746	1,402,500
304	21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4	22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22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4	2203	059.0000D	59D1	390,500	39,050	351,450	6,647,300
304	22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4	22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4	2211	049.0000C	49C2	314,162	31,416	282,746	1,402,500
304	22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23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23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4	2303	059.0000D	59D1	390,500	39,050	351,450	6,647,300
304	23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4	23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4	2311	049.0000C	49C2	314,162	31,416	282,746	1,402,500
304	23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24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24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4	2403	059.0000D	59D1	390,500	39,050	351,450	6,647,300
304	2409	059.0000H	59H1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4	24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4	2411	049.0000C	49C2	314,162	31,416	282,746	1,402,500
304	2412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25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25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4	2503	059.0000D	59D1	390,500	39,050	351,450	6,647,300
304	26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26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4	2603	059.0000D	59D1	390,500	39,050	351,450	6,647,300
304	2701	059.0000D	59D1	386,709	38,671	348,038	6,647,300
304	2702	049.0000A	49A	308,002	30,800	277,202	987,800
304	2703	059.0000D	59D1	390,500	39,050	351,450	6,647,300
305	101	049.0000H	49H	283,361	28,336	255,025	506,000
305	102	049.0000J	49J	295,682	29,568	266,114	1,837,000
305	103	049.0000K	49K	289,522	28,952	260,570	1,080,200
305	104	049.0000K	49K	289,522	28,952	260,570	1,080,200
305	201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5	202	049.0000J	49J	301,842	30,184	271,658	1,837,000
305	203	049.0000K	49K	295,682	29,568	266,114	1,080,200
305	204	049.0000K	49K	295,682	29,568	266,114	1,080,200
305	301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5	302	049.0000J	49J	307,996	30,800	277,196	1,837,000
305	303	049.0000K	49K	295,682	29,568	266,114	1,080,200
305	304	049.0000K	49K	295,682	29,568	266,114	1,080,200
305	308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5	309	049.0000I	49I	301,842	30,184	271,658	1,292,500
305	311	049.0000C	49C3	295,682	29,568	266,114	1,329,900
305	312	059.0000D	59D2	363,961	36,396	327,565	6,606,6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5	401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5	402	049.0000J	49J	307,996	30,800	277,196	1,837,000
305	403	049.0000K	49K	295,682	29,568	266,114	1,080,200
305	404	049.0000K	49K	295,682	29,568	266,114	1,080,200
305	405	049.0000K	49K	295,682	29,568	266,114	1,080,200
305	406	049.0000K	49K	295,682	29,568	266,114	1,080,200
305	407	049.0000J	49J	307,996	30,800	277,196	1,837,000
305	408	049.0000H	49H	289,522	28,952	260,570	506,000
305	409	049.0000I	49I	308,002	30,800	277,202	1,292,500
305	411	049.0000C	49C3	295,682	29,568	266,114	1,329,900
305	412	059.0000D	59D2	371,544	37,154	334,390	6,606,600
305	501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5	502	049.0000J	49J	307,996	30,800	277,196	1,837,000
305	503	049.0000K	49K	301,842	30,184	271,658	1,080,200
305	504	049.0000K	49K	301,842	30,184	271,658	1,080,200
305	505	049.0000K	49K	295,682	29,568	266,114	1,080,200
305	506	049.0000K	49K	295,682	29,568	266,114	1,080,200
305	507	049.0000J	49J	307,996	30,800	277,196	1,837,000
305	508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5	509	049.0000I	49I	308,002	30,800	277,202	1,292,500
305	511	049.0000C	49C3	295,682	29,568	266,114	1,329,900
305	512	059.0000D	59D2	371,544	37,154	334,390	6,606,600
305	601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5	602	049.0000J	49J	314,162	31,416	282,746	1,837,000
305	603	049.0000K	49K	301,842	30,184	271,658	1,080,200
305	604	049.0000K	49K	301,842	30,184	271,658	1,080,200
305	605	049.0000K	49K	301,842	30,184	271,658	1,080,200
305	606	049.0000K	49K	301,842	30,184	271,658	1,080,200
305	607	049.0000J	49J	314,162	31,416	282,746	1,837,000
305	608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5	609	049.0000I	49I	308,002	30,800	277,202	1,292,500
305	611	049.0000C	49C3	301,842	30,184	271,658	1,329,900
305	612	059.0000D	59D2	379,126	37,913	341,213	6,606,600
305	701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5	702	049.0000J	49J	314,162	31,416	282,746	1,837,000
305	703	049.0000K	49K	301,842	30,184	271,658	1,080,200
305	704	049.0000K	49K	301,842	30,184	271,658	1,080,200
305	705	049.0000K	49K	301,842	30,184	271,658	1,080,200
305	706	049.0000K	49K	301,842	30,184	271,658	1,080,200
305	707	049.0000J	49J	314,162	31,416	282,746	1,837,000
305	708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5	709	049.0000I	49I	314,162	31,416	282,746	1,292,500
305	711	049.0000C	49C3	301,842	30,184	271,658	1,329,900
305	712	059.0000D	59D2	379,126	37,913	341,213	6,606,600
305	801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5	802	049.0000J	49J	314,162	31,416	282,746	1,837,0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5	803	049.0000K	49K	301,842	30,184	271,658	1,080,200
305	804	049.0000K	49K	301,842	30,184	271,658	1,080,200
305	805	049.0000K	49K	301,842	30,184	271,658	1,080,200
305	806	049.0000K	49K	301,842	30,184	271,658	1,080,200
305	807	049.0000J	49J	314,162	31,416	282,746	1,837,000
305	808	049.0000H	49H	295,676	29,568	266,108	506,000
305	809	049.0000I	49I	314,162	31,416	282,746	1,292,500
305	811	049.0000C	49C3	301,842	30,184	271,658	1,329,900
305	812	059.0000D	59D2	379,126	37,913	341,213	6,606,600
305	911	049.0000C	49C3	301,842	30,184	271,658	1,329,900
305	912	059.0000D	59D2	379,126	37,913	341,213	6,606,600
305	1009	059.0000H	59H2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5	1010	049.0000C	49C1	308,002	30,800	277,202	1,465,200
305	1011	049.0000C	49C3	308,002	30,800	277,202	1,329,900
305	1012	059.0000D	59D2	379,126	37,913	341,213	6,606,600
305	1109	059.0000H	59H2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5	1110	049.0000C	49C1	308,002	30,800	277,202	1,465,200
305	1111	049.0000C	49C3	308,002	30,800	277,202	1,329,900
305	1112	059.0000D	59D2	386,709	38,671	348,038	6,606,600
305	1209	059.0000H	59H2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5	1210	049.0000C	49C1	308,002	30,800	277,202	1,465,200
305	1211	049.0000C	49C3	308,002	30,800	277,202	1,329,900
305	1212	059.0000D	59D2	386,709	38,671	348,038	6,606,600
305	1309	059.0000H	59H2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5	1310	049.0000C	49C1	308,002	30,800	277,202	1,465,200
305	1311	049.0000C	49C3	308,002	30,800	277,202	1,329,900
305	1312	059.0000D	59D2	386,709	38,671	348,038	6,606,600
305	1409	059.0000H	59H2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5	1410	049.0000C	49C1	308,002	30,800	277,202	1,465,200
305	1411	049.0000C	49C3	308,002	30,800	277,202	1,329,900
305	1412	059.0000D	59D2	386,709	38,671	348,038	6,606,600
305	1509	059.0000H	59H2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5	1510	049.0000C	49C1	308,002	30,800	277,202	1,465,200
305	1511	049.0000C	49C3	308,002	30,800	277,202	1,329,900
305	1512	059.0000D	59D2	386,709	38,671	348,038	6,606,600
305	1609	059.0000H	59H2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5	1610	049.0000C	49C1	308,002	30,800	277,202	1,465,200
305	1611	049.0000C	49C3	308,002	30,800	277,202	1,329,900
305	1612	059.0000D	59D2	386,709	38,671	348,038	6,606,600
305	1709	059.0000H	59H2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5	17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5	1711	049.0000C	49C3	308,002	30,800	277,202	1,329,900
305	1712	059.0000D	59D2	386,709	38,671	348,038	6,606,600
305	1809	059.0000H	59H2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5	18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5	1811	049.0000C	49C3	308,002	30,800	277,202	1,329,9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5	1812	059.0000D	59D2	386,709	38,671	348,038	6,606,600
305	1909	059.0000H	59H2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5	19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5	1911	049.0000C	49C3	308,002	30,800	277,202	1,329,900
305	1912	059.0000D	59D2	386,709	38,671	348,038	6,606,600
305	2009	059.0000H	59H2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5	20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5	2011	049.0000C	49C3	314,162	31,416	282,746	1,329,900
305	2012	059.0000D	59D2	386,709	38,671	348,038	6,606,600
305	2109	059.0000H	59H2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5	21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5	2111	049.0000C	49C3	314,162	31,416	282,746	1,329,900
305	2112	059.0000D	59D2	386,709	38,671	348,038	6,606,600
305	2209	059.0000H	59H2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5	22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5	2211	049.0000C	49C3	314,162	31,416	282,746	1,329,900
305	2212	059.0000D	59D2	386,709	38,671	348,038	6,606,600
305	2309	059.0000H	59H2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5	23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5	2311	049.0000C	49C3	314,162	31,416	282,746	1,329,900
305	2312	059.0000D	59D2	386,709	38,671	348,038	6,606,600
305	2409	059.0000H	59H2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5	24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5	2411	049.0000C	49C3	314,162	31,416	282,746	1,329,900
305	2412	059.0000D	59D2	386,709	38,671	348,038	6,606,600
305	2509	059.0000H	59H2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5	25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5	2511	049.0000C	49C3	314,162	31,416	282,746	1,329,900
305	2512	059.0000D	59D2	386,709	38,671	348,038	6,606,600
305	2609	059.0000H	59H2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5	26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5	2611	049.0000C	49C3	314,162	31,416	282,746	1,329,900
305	2612	059.0000D	59D2	386,709	38,671	348,038	6,606,600
305	2709	059.0000H	59H2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5	27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5	2711	049.0000C	49C3	314,162	31,416	282,746	1,329,900
305	2712	059.0000D	59D2	386,709	38,671	348,038	6,606,600
305	2809	059.0000H	59H2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5	28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5	2811	049.0000C	49C3	314,162	31,416	282,746	1,329,900
305	2812	059.0000D	59D2	386,709	38,671	348,038	6,606,600
305	2909	059.0000H	59H2	371,544	37,154	334,390	1,133,000
305	2910	049.0000C	49C1	314,162	31,416	282,746	1,465,200
305	2911	049.0000C	49C3	314,162	31,416	282,746	1,329,900
305	2912	059.0000D	59D2	386,709	38,671	348,038	6,606,600
306	201	059.0000B	59B	363,961	36,396	327,565	5,825,6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6	202	059.0000B	59B	371,544	37,154	334,390	5,825,600
306	203	049.0000F	49F	295,682	29,568	266,114	2,506,900
306	204	049.0000F	49F	295,682	29,568	266,114	2,506,900
306	301	059.0000B	59B	371,544	37,154	334,390	5,825,600
306	302	059.0000B	59B	371,544	37,154	334,390	5,825,600
306	303	049.0000F	49F	301,842	30,184	271,658	2,506,900
306	304	049.0000F	49F	301,842	30,184	271,658	2,506,900
306	401	059.0000B	59B	371,544	37,154	334,390	5,825,600
306	402	059.0000B	59B	379,126	37,913	341,213	5,825,600
306	403	049.0000F	49F	301,842	30,184	271,658	2,506,900
306	404	049.0000F	49F	301,842	30,184	271,658	2,506,900
306	501	059.0000B	59B	379,126	37,913	341,213	5,825,600
306	502	059.0000B	59B	379,126	37,913	341,213	5,825,600
306	503	049.0000F	49F	301,842	30,184	271,658	2,506,900
306	504	049.0000F	49F	301,842	30,184	271,658	2,506,900
306	601	059.0000B	59B	379,126	37,913	341,213	5,825,600
306	602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6	603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6	604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6	701	059.0000B	59B	379,126	37,913	341,213	5,825,600
306	702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6	703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6	704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6	801	059.0000B	59B	379,126	37,913	341,213	5,825,600
306	802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6	803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6	804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6	901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6	902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6	903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6	904	049.0000F	49F	308,002	30,800	277,202	2,506,900
306	1001	059.0000B	59B	386,709	38,671	348,038	5,825,600
306	10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10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6	1004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6	1101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11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11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6	1104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6	1201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12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12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6	1204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6	1301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13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13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6	1304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6	1401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14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14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6	1404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6	1501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15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15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6	1504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6	1601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16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16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6	1604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6	1701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17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17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6	1704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6	18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18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6	1804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6	19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1903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6	1904	049.0000F	49F	314,162	31,416	282,746	2,506,900
306	20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20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6	20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6	21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21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6	21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6	22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22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6	22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6	23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23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6	23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6	24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24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6	24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6	25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25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6	25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6	26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26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6	26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6	27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27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6	27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6	28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28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6	28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6	2902	059.0000B	59B	390,500	39,050	351,450	5,825,600
306	2903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6	2904	049.0000F	49F	317,242	31,724	285,518	2,506,900
307	102	059.0000F	59F	348,796	34,880	313,916	1,175,900
307	103	059.0000C	59C1	356,379	35,638	320,741	2,759,900
307	104	059.0000C	59C1	356,379	35,638	320,741	2,759,900
307	105	059.0000C	59C1	356,379	35,638	320,741	2,759,900
307	106	059.0000A	59A	356,379	35,638	320,741	2,113,100
307	201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07	2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07	203	059.0000C	59C2	386,709	38,671	348,038	3,338,500
307	204	059.0000C	59C2	386,709	38,671	348,038	3,338,500
307	205	059.0000C	59C2	386,709	38,671	348,038	3,338,500
307	206	059.0000A	59A	363,961	36,396	327,565	2,113,100
307	301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07	3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07	303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304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305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306	059.0000A	59A	371,544	37,154	334,390	2,113,100
307	401	059.0000E	59E	371,544	37,154	334,390	6,826,600
307	4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07	403	059.0000A	59A	379,126	37,913	341,213	2,113,100
307	404	059.0000A	59A	379,126	37,913	341,213	2,113,100
307	405	059.0000A	59A	379,126	37,913	341,213	2,113,100
307	406	059.0000A	59A	379,126	37,913	341,213	2,113,100
307	501	059.0000E	59E	371,544	37,154	334,390	6,826,600
307	5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07	503	059.0000A	59A	379,126	37,913	341,213	2,113,100
307	504	059.0000A	59A	379,126	37,913	341,213	2,113,100
307	505	059.0000A	59A	379,126	37,913	341,213	2,113,100
307	506	059.0000A	59A	379,126	37,913	341,213	2,113,100
307	601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7	6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7	603	059.0000A	59A	379,126	37,913	341,213	2,113,100
307	604	059.0000A	59A	379,126	37,913	341,213	2,113,100
307	605	059.0000A	59A	379,126	37,913	341,213	2,113,100
307	606	059.0000A	59A	379,126	37,913	341,213	2,113,100
307	701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7	7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7	703	059.0000A	59A	379,126	37,913	341,213	2,113,100
307	704	059.0000A	59A	379,126	37,913	341,213	2,113,1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7	705	059.0000A	59A	379,126	37,913	341,213	2,113,100
307	706	059.0000A	59A	379,126	37,913	341,213	2,113,100
307	801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7	8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7	803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804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805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806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901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7	9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7	903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904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905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906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1001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7	10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7	1003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1004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1005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1006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1101	059.0000E	59E	386,709	38,671	348,038	6,826,600
307	11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7	1103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1104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1105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1106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1201	059.0000E	59E	386,709	38,671	348,038	6,826,600
307	12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7	1205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1206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1305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7	1306	059.0000A	59A	386,709	38,671	348,038	2,113,100
308	102	059.0000F	59F	348,796	34,880	313,916	1,175,900
308	103	059.0000G	59G	356,379	35,638	320,741	1,959,100
308	104	059.0000G	59G	356,379	35,638	320,741	1,959,100
308	105	059.0000G	59G	356,379	35,638	320,741	1,959,100
308	201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08	2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08	203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08	204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08	205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08	206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08	301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08	3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08	303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08	304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8	305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08	306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08	401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08	4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08	403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08	404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08	405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08	406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08	501	059.0000E	59E	371,544	37,154	334,390	6,826,600
308	5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08	503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08	504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08	505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08	506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08	601	059.0000E	59E	371,544	37,154	334,390	6,826,600
308	6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08	603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08	604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08	605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08	606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08	701	059.0000E	59E	371,544	37,154	334,390	6,826,600
308	7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8	703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08	704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08	705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08	706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08	801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8	8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8	803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08	804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08	805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08	806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08	901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8	9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8	903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08	904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08	905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08	906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08	1001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8	10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8	1003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08	1004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08	1005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08	1006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08	1101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8	11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8	1103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08	1104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08	1105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08	1106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08	1201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8	12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8	1205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08	1206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08	1305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08	1306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08	1405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08	1406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09	201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09	2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09	203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09	204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09	301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09	3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09	303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09	304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09	401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09	4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09	403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09	404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09	501	059.0000E	59E	371,544	37,154	334,390	6,826,600
309	5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09	503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09	504	059.0000E	59E	371,544	37,154	334,390	6,826,600
309	601	059.0000E	59E	371,544	37,154	334,390	6,826,600
309	6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9	603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9	604	059.0000E	59E	371,544	37,154	334,390	6,826,600
309	701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9	7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9	703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9	704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9	801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9	8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9	803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9	804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9	901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9	9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9	903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9	904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9	1001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9	10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09	1003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9	1004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9	1101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9	11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9	1201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9	12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09	1301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09	13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10	201	049.0000G	49G	308,002	30,800	277,202	5,634,200
310	202	049.0000D	49D	295,682	29,568	266,114	4,694,800
310	203	049.0000E	49E	295,682	29,568	266,114	2,233,000
310	204	049.0000D	49D	295,682	29,568	266,114	4,694,800
310	205	049.0000E	49E	295,682	29,568	266,114	2,233,000
310	206	049.0000E	49E	295,682	29,568	266,114	2,233,000
310	207	059.0000I	59I	390,500	39,050	351,450	4,714,600
310	208	059.0000I	59I	390,500	39,050	351,450	4,714,600
310	209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0	210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0	301	049.0000G	49G	314,162	31,416	282,746	5,634,200
310	302	049.0000D	49D	295,682	29,568	266,114	4,694,800
310	303	049.0000E	49E	295,682	29,568	266,114	2,233,000
310	304	049.0000D	49D	295,682	29,568	266,114	4,694,800
310	305	049.0000E	49E	295,682	29,568	266,114	2,233,000
310	306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0	309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0	310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0	401	049.0000G	49G	317,242	31,724	285,518	5,634,200
310	402	049.0000D	49D	295,682	29,568	266,114	4,694,800
310	403	049.0000E	49E	295,682	29,568	266,114	2,233,000
310	404	049.0000D	49D	301,842	30,184	271,658	4,694,800
310	405	049.0000E	49E	295,682	29,568	266,114	2,233,000
310	406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0	407	059.0000I	59I	390,500	39,050	351,450	4,714,600
310	408	059.0000I	59I	390,500	39,050	351,450	4,714,600
310	409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0	410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0	501	049.0000G	49G	317,242	31,724	285,518	5,634,200
310	502	049.0000D	49D	301,842	30,184	271,658	4,694,800
310	503	049.0000E	49E	295,682	29,568	266,114	2,233,000
310	504	049.0000D	49D	301,842	30,184	271,658	4,694,800
310	505	049.0000E	49E	295,682	29,568	266,114	2,233,000
310	506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0	509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0	510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0	601	049.0000G	49G	317,242	31,724	285,518	5,634,200
310	602	049.0000D	49D	301,842	30,184	271,658	4,694,8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10	603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0	604	049.0000D	49D	301,842	30,184	271,658	4,694,800
310	605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0	606	049.0000E	49E	308,002	30,800	277,202	2,233,000
310	607	059.0000I	59I	390,500	39,050	351,450	4,714,600
310	608	059.0000I	59I	390,500	39,050	351,450	4,714,600
310	609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0	610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0	701	049.0000G	49G	317,242	31,724	285,518	5,634,200
310	702	049.0000D	49D	301,842	30,184	271,658	4,694,800
310	703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0	704	049.0000D	49D	308,002	30,800	277,202	4,694,800
310	705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0	706	049.0000E	49E	308,002	30,800	277,202	2,233,000
310	709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0	710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0	801	049.0000G	49G	317,242	31,724	285,518	5,634,200
310	802	049.0000D	49D	308,002	30,800	277,202	4,694,800
310	803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0	804	049.0000D	49D	308,002	30,800	277,202	4,694,800
310	805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0	806	049.0000E	49E	308,002	30,800	277,202	2,233,000
310	807	059.0000I	59I	390,500	39,050	351,450	4,714,600
310	808	059.0000I	59I	390,500	39,050	351,450	4,714,600
310	809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0	810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0	901	049.0000G	49G	317,242	31,724	285,518	5,634,200
310	902	049.0000D	49D	308,002	30,800	277,202	4,694,800
310	903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0	904	049.0000D	49D	308,002	30,800	277,202	4,694,800
310	905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0	906	049.0000E	49E	308,002	30,800	277,202	2,233,000
310	909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0	910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0	1003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0	1004	049.0000D	49D	308,002	30,800	277,202	4,694,800
310	1005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0	1006	049.0000E	49E	308,002	30,800	277,202	2,233,000
310	1007	059.0000I	59I	390,500	39,050	351,450	4,714,600
310	1008	059.0000I	59I	390,500	39,050	351,450	4,714,600
310	1009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0	1010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0	1105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0	1106	049.0000E	49E	308,002	30,800	277,202	2,233,000
310	1109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0	1110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10	1205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0	1206	049.0000E	49E	308,002	30,800	277,202	2,233,000
310	1207	059.0000I	59I	390,500	39,050	351,450	4,714,600
310	1208	059.0000I	59I	390,500	39,050	351,450	4,714,600
310	1209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0	1210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0	1309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0	1310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1	102	049.0000D	49D	289,522	28,952	260,570	4,694,800
311	103	049.0000E	49E	289,522	28,952	260,570	2,233,000
311	201	049.0000G	49G	308,002	30,800	277,202	5,634,200
311	202	049.0000D	49D	295,682	29,568	266,114	4,694,800
311	203	049.0000E	49E	295,682	29,568	266,114	2,233,000
311	204	049.0000E	49E	295,682	29,568	266,114	2,233,000
311	301	049.0000G	49G	308,002	30,800	277,202	5,634,200
311	302	049.0000D	49D	295,682	29,568	266,114	4,694,800
311	303	049.0000E	49E	295,682	29,568	266,114	2,233,000
311	304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1	401	049.0000G	49G	314,162	31,416	282,746	5,634,200
311	402	049.0000D	49D	295,682	29,568	266,114	4,694,800
311	403	049.0000E	49E	295,682	29,568	266,114	2,233,000
311	404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1	501	049.0000G	49G	317,242	31,724	285,518	5,634,200
311	502	049.0000D	49D	301,842	30,184	271,658	4,694,800
311	503	049.0000E	49E	295,682	29,568	266,114	2,233,000
311	504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1	601	049.0000G	49G	317,242	31,724	285,518	5,634,200
311	602	049.0000D	49D	301,842	30,184	271,658	4,694,800
311	603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1	604	049.0000E	49E	308,002	30,800	277,202	2,233,000
311	701	049.0000G	49G	317,242	31,724	285,518	5,634,200
311	702	049.0000D	49D	301,842	30,184	271,658	4,694,800
311	703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1	704	049.0000E	49E	308,002	30,800	277,202	2,233,000
311	803	049.0000E	49E	301,842	30,184	271,658	2,233,000
311	804	049.0000E	49E	308,002	30,800	277,202	2,233,000
312	101	059.0000E	59E	356,379	35,638	320,741	6,826,600
312	102	059.0000F	59F	348,796	34,880	313,916	1,175,900
312	103	059.0000G	59G	348,796	34,880	313,916	1,959,100
312	104	059.0000G	59G	348,796	34,880	313,916	1,959,100
312	201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12	2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12	203	059.0000G	59G	356,379	35,638	320,741	1,959,100
312	204	059.0000G	59G	356,379	35,638	320,741	1,959,100
312	301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12	3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12	303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2	304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2	401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12	4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12	403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2	404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2	501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12	5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12	503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2	504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2	603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2	604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2	703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2	704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3	101	049.0000C	49C1	289,522	28,952	260,570	1,465,200
313	103	049.0000C	49C1	289,522	28,952	260,570	1,465,200
313	104	049.0000C	49C1	289,522	28,952	260,570	1,465,200
313	201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3	202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3	203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3	204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3	301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3	302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3	303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3	304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3	401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3	402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3	403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3	404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3	501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3	502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3	503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3	504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3	603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3	604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3	703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3	704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4	101	059.0000E	59E	348,796	34,880	313,916	6,826,600
314	102	059.0000F	59F	348,796	34,880	313,916	1,175,900
314	103	059.0000G	59G	348,796	34,880	313,916	1,959,100
314	104	059.0000G	59G	356,379	35,638	320,741	1,959,100
314	201	059.0000E	59E	356,379	35,638	320,741	6,826,600
314	2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14	203	059.0000G	59G	356,379	35,638	320,741	1,959,100
314	204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4	301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14	3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14	303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4	304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4	401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14	4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14	403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4	404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4	501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14	5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14	503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4	504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4	601	059.0000E	59E	371,544	37,154	334,390	6,826,600
314	6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14	603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4	604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4	701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14	7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14	703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4	704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4	801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14	8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15	101	059.0000E	59E	348,796	34,880	313,916	6,826,600
315	102	059.0000F	59F	348,796	34,880	313,916	1,175,900
315	104	059.0000G	59G	348,796	34,880	313,916	1,959,100
315	201	059.0000E	59E	356,379	35,638	320,741	6,826,600
315	2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15	203	059.0000G	59G	356,379	35,638	320,741	1,959,100
315	204	059.0000G	59G	356,379	35,638	320,741	1,959,100
315	301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15	3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15	303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5	304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5	401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15	4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15	403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5	404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5	501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15	5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15	503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5	504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5	601	059.0000E	59E	371,544	37,154	334,390	6,826,600
315	6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15	603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5	604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5	701	059.0000E	59E	371,544	37,154	334,390	6,826,600
315	702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15	703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5	704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5	801	059.0000E	59E	371,544	37,154	334,390	6,826,600
315	802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16	101	049.0000C	49C1	289,522	28,952	260,570	1,465,200
316	102	049.0000C	49C1	289,522	28,952	260,570	1,465,200
316	103	049.0000C	49C1	289,522	28,952	260,570	1,465,200
316	104	049.0000C	49C1	289,522	28,952	260,570	1,465,200
316	105	049.0000C	49C1	289,522	28,952	260,570	1,465,200
316	107	059.0000G	59G	356,379	35,638	320,741	1,959,100
316	108	059.0000G	59G	356,379	35,638	320,741	1,959,100
316	109	059.0000G	59G	356,379	35,638	320,741	1,959,100
316	201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6	202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6	203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6	204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6	205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6	207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6	208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6	209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6	210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6	301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6	302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6	303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6	304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6	305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6	306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6	307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6	308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6	309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6	310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6	401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6	402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6	403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6	404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6	405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6	406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6	407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6	408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6	409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6	410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6	501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6	502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6	503	049.0000C	49C1	295,682	29,568	266,114	1,465,200
316	504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6	505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16	506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6	507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6	508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6	509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6	510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6	601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6	602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6	603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6	604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6	605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6	606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6	607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6	608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6	609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6	610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6	701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6	702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6	703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6	704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6	705	049.0000C	49C1	308,002	30,800	277,202	1,465,200
316	706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6	707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6	708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6	709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6	710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801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6	802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6	803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6	804	049.0000C	49C1	308,002	30,800	277,202	1,465,200
316	805	049.0000C	49C1	308,002	30,800	277,202	1,465,200
316	806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6	807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808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809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810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901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6	902	049.0000C	49C1	301,842	30,184	271,658	1,465,200
316	905	049.0000C	49C1	308,002	30,800	277,202	1,465,200
316	906	049.0000C	49C1	308,002	30,800	277,202	1,465,200
316	907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908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909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910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1007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1008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1009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16	1010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1107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1108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1109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1110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1207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1208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1209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1210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1307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1308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1309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6	1310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7	101	059.0000G	59G	356,379	35,638	320,741	1,959,100
317	104	059.0000G	59G	348,796	34,880	313,916	1,959,100
317	106	059.0000G	59G	356,379	35,638	320,741	1,959,100
317	107	059.0000F	59F	348,796	34,880	313,916	1,175,900
317	201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7	202	059.0000G	59G	356,379	35,638	320,741	1,959,100
317	203	059.0000G	59G	356,379	35,638	320,741	1,959,100
317	204	059.0000G	59G	356,379	35,638	320,741	1,959,100
317	206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7	207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17	208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17	301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7	302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7	303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7	304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7	305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7	306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7	307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17	308	059.0000E	59E	363,961	36,396	327,565	6,826,600
317	401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7	402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7	403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7	404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7	405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7	406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7	407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17	408	059.0000E	59E	371,544	37,154	334,390	6,826,600
317	501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7	502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7	503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7	504	059.0000G	59G	363,961	36,396	327,565	1,959,100
317	505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7	506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동	호	주택형	평면유형	주택가격(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317	507	059.0000F	59F	356,379	35,638	320,741	1,175,900
317	508	059.0000E	59E	371,544	37,154	334,390	6,826,600
317	601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7	602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7	603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7	604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7	605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7	606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7	607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17	608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17	701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7	702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7	703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7	704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7	705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7	706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7	707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17	708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17	801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7	802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7	803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7	804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7	805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7	806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7	807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17	808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17	901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7	902	059.0000G	59G	371,544	37,154	334,390	1,959,100
317	905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7	906	059.0000G	59G	379,126	37,913	341,213	1,959,100
317	907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17	908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17	1007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17	1008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17	1107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17	1108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17	1207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17	1208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17	1307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17	1308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17	1407	059.0000F	59F	363,961	36,396	327,565	1,175,900
317	1408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317	1507	059.0000F	59F	371,544	37,154	334,390	1,175,900
317	1508	059.0000E	59E	379,126	37,913	341,213	6,826,600

4. 발코니 확장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의 평면유형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는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형	평면유형	발코니확장비용(원, 부가세 포함)		
		계	계약금 (계약 시 10%)	잔금 (입주 시 90%)
049.0000A	49A	987,800	98,780	889,020
049.0000B	49B	1,342,000	134,200	1,207,800
049.0000C	49C1	1,465,200	146,520	1,318,680
	49C2	1,402,500	140,250	1,262,250
	49C3	1,329,900	132,990	1,196,910
049.0000D	49D	4,694,800	469,480	4,225,320
049.0000E	49E	2,233,000	223,300	2,009,700
049.0000F	49F	2,506,900	250,690	2,256,210
049.0000G	49G	5,634,200	563,420	5,070,780
049.0000H	49H	506,000	50,600	455,400
049.0000I	49I	1,292,500	129,250	1,163,250
049.0000J	49J	1,837,000	183,700	1,653,300
049.0000K	49K	1,080,200	108,020	972,180
059.0000A	59A	2,113,100	211,310	1,901,790
059.0000B	59B	5,825,600	582,560	5,243,040
059.0000C	59C1	2,759,900	275,990	2,483,910
	59C2	3,338,500	333,850	3,004,650
059.0000D	59D1	6,647,300	664,730	5,982,570
	59D2	6,606,600	660,660	5,945,940
059.0000E	59E	6,826,600	682,660	6,143,940
059.0000F	59F	1,175,900	117,590	1,058,310
059.0000G	59G	1,959,100	195,910	1,763,190
059.0000H	59H1	1,133,000	113,300	1,019,700
	59H2	1,133,000	113,300	1,019,700
059.0000I	59I	4,714,600	471,460	4,243,140

5. 토지임대료

전용면적(㎡)	토지임대료(원/월)	비 고
49	426,000	전용 49㎡ 전체 주택형에 동일 적용
59	511,500	전용 59㎡ 전체 주택형에 동일 적용

토지임대료 산정방법 및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서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에 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9호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을 하는 SH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함)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갖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소유자(SH)와 「주택법」 제78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40년 이내의 임대차기간(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갱신 가능)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합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23.04.07.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의하여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주택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적용합니다(토지임대료의 선납할인은 별도 없음).

■ 「주택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토지소유자(SH)는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토지임대료의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토지임대료 보증금 전환

■ 월 토지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상세 내용은 향후 관계 법령 및 공사 기준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계약 전 안내 예정)

※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적용합니다.

■ **월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입주 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아래의 예시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토지임대료 보증금 전환 예시]

전용면적(㎡)	전환 전 토지임대료(원/월)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율	전환보증금	전환 후 토지임대료
49	426,000	60%	2.5%	122,000,000	171,830
59	511,500	60%	2.5%	147,000,000	205,250

6. 분양금 납부 안내

■ 분양금 납부 안내

- **분양금(주택가격)의 납부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발코니확장 잔금 포함)은 열쇠 불출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잔금(발코니확장 잔금)** 납부 전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하여 열쇠불출이 불가합니다(은행 지정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분양금은 (계약금 〉 발코니확장 계약금 〉 잔금 〉 발코니확장 잔금) 순서로 수납 처리됩니다.
- **계약금은 분양계약 체결 전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 입금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납부기한 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잔금 납부기한(입주지정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연3.4%**(현행,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일수를 반영하여 할인 가능합니다. 분양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연7.5%**의 연체료(현행,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가 가산됩니다.
- **휴일, 공휴일에 입주하시고자 하는 세대는 당일 현장 수납이 불가하오니 금요일(공휴일인 경우 전날)까지 완납하시거나, 입주 당일에 가상계좌 입금(이체한도 증액 조정 등 관련사항 체크 요망) 후 이체확인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을 실행하여 주말에 입주하는 세대는 반드시 입주 전(평일)에 대출실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납기간에 납부한 잔금(발코니확장 잔금)은 입금 즉시 선납할인 처리됨에 따라 반환 청구가 불가하오니 선납기간에 잔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 선납할인 금액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임시 산정하고, 추후 입주지정기간 확정 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실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잔금 고지서는 납부기한일 전에 분양계약서 상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며, 주소변경 및 배달 착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지서가 납부기한 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SH공사 수납부에 확인하거나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납부금 조회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체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발급 가능 서류

- 분양금 고지서(잔금고지서-선납할인, 연체, 분납 고지서 포함) 발급

공사 홈페이지에서 "납부금 고지서(잔금고지서-선납할인, 연체, 분납 고지서 포함)" 발급 방법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방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우측 "납부금 조회"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주택분양금 조회 → 납부내역에서 잔금 등 확인 후 고지서 재발행하여 납부 금액 및 고객전용 입금계좌 확인

※ 잔금 고지서 수령주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수납부에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fax.02-3410-7515)하시기 바람.

- 분양금 납부내역서

분양주택 분양금 납부내역서는 대출, 입주, 취득세 신고 등 납부내역 증빙용 서류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전자 발급 가능(계약 전에는 이용 불가하며, 계약 이후 가능, 계약 시 대상자에게만 고지서 발부)

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금 납부내역서" 발급 방법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방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고객센터 → 증명서 신청 → 4.주택분양금납부내역서 바로가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 본인 명의의 주택 선택 후 신청하기 선택 → 분양금 수납 담당자의 승인 후 출력 (담당자의 승인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출력 가능, 승인 시 문자 발송하여 승인 알림)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시 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여 팩스 또는 방문발급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과오납 신청서

분양금 과오납시에는 과오납 반환신청서(공사 수납부 비치,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계약자 신분증 사본 1부, 계약자 통장사본 1부를 수납부로 제출(fax. 02-3410-7515)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금 "과오납 신청서" 발급 방법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방문 → 고객센터 → SH 자료실 → "반환청구 및 계좌입금 신청서" 다운로드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 및 잔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해당 시점까지 입주하지 못할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문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1600-3456

2 신청기준(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으로 신청자격별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 공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 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48페이지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참고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우선공급 비율		지역구분	
	해당지역(서울)	기타지역(수도권)	해당지역(서울)	기타지역(수도권)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10.16.)	50%	5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당시 거주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지역 우선공급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34조에 따른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해당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 상실).

※ 주택타입 및 공급유형별 공급세대수를 상기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배분할 때 소수점 이하가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되, 공급세대수가 최소물량(2세대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기타지역 순으로 배정합니다.

※ 해당지역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의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 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첨자발표(2026.11.26. 예정)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적용대상 : 사전청약 당첨자,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청년 특별공급)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 외)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 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 중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신고 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 소재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분양권등 포함)의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기간(분양권등 포함) 산정 기준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의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 :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3. 총자산 보유기준

■ **적용대상**

- **청년 특별공급 : 신청자 본인 및 부·모**
- **신혼부부**(신혼부부, 한부모가족)**·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신혼부부 중 예비신혼부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세대를 말함)
- **사전청약 당첨자 : 재심사하지 않음**

■ 총자산 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의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서에 따라 조사기준일(통상 우리 공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조회 요청하는 날로부터 3개월전 말일)**로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첨자의 **총자산을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총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총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의 총자산기준**은 ①**신청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가액의 총합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및 ②**신청자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가액의 총합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각각 검증**합니다. 기준 초과 시 당첨이 취소되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총자산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가액의 총합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검증합니다. 기준 초과 시 당첨이 취소되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4항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3〉 총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3〉 총자산 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총자산 보유기준</th><th colspan="2">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상기 '3. 총자산 판정 기준'에서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h></tr>
<tr><td rowspan="2">① 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3">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62백만원 이하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 276백만원 이하
및 부모
1,035백만원 이하)</td><td>건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건 물</td><td>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r><td colspan="2">시설물</td><td>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이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r><td>② 자동차</td><td colspan="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td></tr>
</table>

구분	총자산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상기 '3. 총자산 판정 기준'에서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일반자산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62백만원 이하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 276백만원 이하 및 부모 1,035백만원 이하)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④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간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조사기준일의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조사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조사기준일의 액면가액 • 예수금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 연금저축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⑤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론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순위자)	추첨공급
총자산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자 본인)** 276백만원 이하 **(부모)** 1,035백만원 이하	362백만원 이하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 1명만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 311백만원 이하 **(부모)** 1,035백만원 이하	397백만원 이하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신청자 본인)** 345백만원 이하 **(부모)** 1,035백만원 이하	431백만원 이하					

※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당첨자서류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출생)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5년식 자동차를 2024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청년 특별공급 : 신청자 본인**
- **신혼부부**(신혼부부, 한부모가족)**·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신혼부부 중 예비신혼부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세대를 말함)
- **사전청약 당첨자 : 재심사하지 않음**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청년 소득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청년 특별공급은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청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청년)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2,669,354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813,363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5,338,708원

※ **청년 특별공급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 **"〈표4-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청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4-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청년)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3,050,690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3,432,027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4,194,699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4,576,036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5,720,045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6,101,381원

※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아래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공급유형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일반공급 (6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원	17,604,404원	18,653,970원	19,812,526원	20,971,082원	22,129,638원
생애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원	17,604,404원	18,653,970원	19,812,526원	20,971,082원	22,129,638원
신생아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300,645원	13,203,303원	13,990,478원	14,859,395원	15,728,312원	16,597,229원
	추첨공급 (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원	17,604,404원	18,653,970원	19,812,526원	20,971,082원	22,129,638원
일반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우선공급 (1순위자)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추첨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원	17,604,404원	18,653,970원	19,812,526원	20,971,082원	22,129,638원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 **"〈표5-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5-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원	7,041,762원	7,461,588원	7,925,010원	8,388,433원	8,851,85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780,387원	7,921,982원	8,394,287원	8,915,637원	9,436,987원	9,958,337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8,287,139원	9,682,422원	10,259,684원	10,896,889원	11,534,095원	12,171,301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1,300,645원	13,203,303원	13,990,478원	14,859,395원	15,728,312원	16,597,22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2,807,397원	14,963,743원	15,855,875원	16,840,647원	17,825,420원	18,810,192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5,820,902원	18,484,624원	19,586,669원	20,803,152원	22,019,636원	23,236,120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6,574,279원	19,364,844원	20,519,367원	21,793,779원	23,068,190원	24,342,602원

※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가구원수 적용 기준**

구 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47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47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위 '가구원수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공적자료 정정·수정·변경 등에 대한 동 기관의 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만 접수·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 → ②근로복지공단 → ③국민연금공단 →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 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방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근로복지공단 등

3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0.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전용59형: 2022.12.30. / 전용49형: 2023.06.13.)**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6.10.16.)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상속의 경우는 제외)**이 없고,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분**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검증하므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도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사전청약 신청 당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검증합니다.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기준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해당 주택의 무순위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됩니다.
- 전용면적 59㎡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2022.12.30.)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고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부적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전용면적 49㎡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역우선 공급 관련 사항은 2023.06.13.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정한 기준에 따르는 바, 당첨자에게 요구되는 지역우선 거주기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10.26.(월) 10:00 ~ 2026.10.27.(화) 17:00**

※ 신청기간 중에는 인터넷으로 24시간 청약 가능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SH 인터넷청약시스템(https://www.i-sh.co.kr/app) 접속 → 홈페이지 상단의 청약공고에서 고덕강일지구 3단지 [신청하기] 선택 → [청약중] 선택 → 인증서 로그인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및 당첨된 주택형 내 주택타입 선호순위 선택 → 청약내용 확인 후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완료 후) 주택형(주택타입) 발표 확인 → 본청약 신청 취소 시 포기 신청 필요

-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신청서 작성 시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형의 모든 주택타입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선택(중복선택 불가)해야 합니다. 주택타입은 각 선호순위 순(1순위 → 2순위 → 3순위→…)으로 **우리 공사 전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됩니다.** (모든 타입에 대해 선호순위 기입필요)

사업지구 및 단지	사전청약 시 당첨된 주택형	본청약 시 선택 가능한 주택타입	발코니 확장 여부
고덕강일지구 3단지	49	49A, 49B, 49C, 49D, 49E, 49F, 49G, 49H, 49I, 49J, 49K	발코니 확장형
	59	59A, 59B, 59C, 59D, 59E, 59F, 59G, 59H, 59I	

- 사전청약 당첨자가 배정된 주택타입을 확인한 후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당첨포기가 가능하며, 반드시 취소 신청 기간 내에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포기 신청'(인증서 로그인 필요)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당첨포기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서의 지위는 상실되며, 취소 및 철회가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포기는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포기 후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금회 공급되는 주택(특별 및 일반공급)에 한 번 더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향후 청약 시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특별/일반공급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합니다.)
- 주택타입 배정결과 확인 일정 : 2026.10.29.(목) 16:00 (SH 인터넷청약시스템 → 메인화면 왼쪽 아래의 '대상자 조회·제출' → 기타 조회·제출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타입 배정결과 조회
- 사전청약당첨자 본청약 취소 기간 : 2026.10.30.(금) 10:00 ~ 17:00 (SH 인터넷청약시스템 → 메인화면 왼쪽 아래의 '대상자 조회·제출' → 기타 조회·제출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타입 배정결과 조회 →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포기 신청

- **동·호수는 본청약에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한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신청 주택타입 내에서 동·층·향·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미신청 혹은 미계약된 동·호수가 발생할 경우에도 동·호수 변경 불가)**

-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발코니 비확장형은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방문 인터넷 대행접수를 운영하며, 상세 내용은 1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반드시 위에 명시된 "사전청약 당첨자" 전용 청약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당첨 당시의 공급구분에 관계없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 신청" 또는 "특별공급 신청" 아님)

※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용 민간인증서(카카오톡, KB국민은행, 통신사 PASS,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토스) 중 **1개를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가 위 신청기간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본청약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물량(포기 물량 포함)은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유의사항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2026.11.26.) 이후에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입주자저축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본청약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시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해당 주택의 무순위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됩니다.

[중복신청 불가]

- **(공급유형 간)** 사전청약 당첨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기간(2026.10.26. ~ 2026.10.27.)에 신청한 후, **다른 공급유형(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됩니다.** 단, 사전청약 당첨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기간(2026.10.26. ~ 2026.10.27.)에 신청하지 않은(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공급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합니다.
- **(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사전청약 당첨자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이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간)** 청약 신청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 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세대 내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청약 포함)에 1인이 중복으로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의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제한]

- **(특별공급 당첨 횟수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같은 법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과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당첨자 서류 제출]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2026.11.30. ~ 2026.12.09.) 내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114페이지** 7-2.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청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19세 이상~39세 이하**(1986.10.17. ~ 2007.10.16. 출생)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각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④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청년)"의 140% 이하인 분**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5,338,708원

■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7〉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본인의 월평균소득*	① 70% 이하	3	-
	② 70% 초과 100% 이하	2	
	③ 100% 초과	1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0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본인의 월평균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을 초과하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당첨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2,669,354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813,363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5,338,708원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4-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청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 물량을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8〉 청년 특별공급 일반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청년 특별공급 일반공급 가점표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본인의 월평균소득*	① 70% 이하	3	-
	② 70% 초과 100% 이하	2	
	③ 100% 초과	1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4)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① 5년 이상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세 납부이력이 없는 경우 0점
	② 3년 이상 5년 미만	2	
	③ 3년 미만	1	
	④ 해당 없음	0	

* 본인의 월평균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을 초과하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당첨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인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2,669,354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3,813,363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5,338,708원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4-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청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청약신청 관련]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청년 본인 및 부·모 모두(예외 사항 없음)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와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관련]

- **(공급유형 간) 청년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와 부모 간)**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과 부모가 **분리세대(신청자 본인과 부모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인 경우는 부모가 별도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과 부모가 동일세대(신청자 본인과 부모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인 경우, 부모가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사전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시어 인터넷청약 신청 시 **부모님의 동일세대·분리세대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제한사항 관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기준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후 당첨되면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단계 일반공급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물량을 정해진 비율만큼 선 배정 후 잔여 주택에 대해 일반공급하기 때문에, 주택타입별로 배정된 주택 수에 따라 1단계 우선공급에서 공급이 종료되어 2단계 일반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2019.10.16. 이후 혼인)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2019.10.17. 이후 출생, 태아 포함)가 있는 분],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고 해당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는 분],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2019.10.17. 이후 출생, 태아 포함)가 있는 분]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47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고)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입주가 불가합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분을 포함)을 말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신혼부부 추첨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원	17,604,404원	18,653,970원	19,812,526원	20,971,082원	22,129,638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2024.10.16. 이후 혼인) **2세 이하**(만 3세 미만으로 2023.10.17. 이후 출생, 태아 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② 예비신혼부부, ③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맞벌이 경우에는 14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9〉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9〉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① 70% 이하	3	맞벌이인 경우 8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2	맞벌이인 경우 80% 초과 110% 이하
	③ 100% 초과	1	맞벌이인 경우 110% 초과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소득 가점은 가구원수 및 배우자 소득 유무(맞벌이 여부)에 따라 아래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을 초과하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당첨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0% 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5,273,634원	6,161,541원	6,528,890원	6,934,384원	7,339,879원	7,745,37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6,027,010원	7,041,762원	7,461,588원	7,925,010원	8,388,433원	8,851,855원
100% 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287,139원	9,682,422원	10,259,684원	10,896,889원	11,534,095원	12,171,301원
130% 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2019.10.16.~2024.10.15. 혼인)**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2019.10.17.~2023.10.16. 출생,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②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고,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맞벌이 경우에는 140%) 이하인 사람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물량의 6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10〉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10〉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가점표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자녀 수*	① 3명 이상	3	태아(입양) 포함
	② 2명	2	
	③ 1명	1	
(2) 무주택기간**	① 3년 이상	3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공고일 현재 만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0점**
	② 1년 이상 3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해당 없음	0	
(3) 해당 시 · 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1) 미성년자녀 수 입력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자녀 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자녀 수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미성년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직계비속)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임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입주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2) 무주택기간

-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무주택이 된 날부터 산정합니다.

산 정 예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84페이지 2-2.'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불인정)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 물량을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청약신청 관련]

-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관련]

- **(공급유형 간)**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 간)**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 **청약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하되, 분 단위도 동일하다면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인정**되고,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됩니다. 단, 부부가 중복접수 시 청약통장은 신청자 각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청약통장 교환 불가).
-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간)**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청약제한사항 관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동법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특례 관련]

- 신청자의 배우자(예비신혼부부 제외)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예비신혼부부 제외)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예비신혼부부 포함)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당첨 후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유)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49페이지 출산특례 참고).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의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전에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청약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단계 일반공급 및 3단계 추첨공급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물량을 정해진 비율만큼 선 배정 후 잔여 주택에 대해 일반공급 및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주택타입별로 배정된 주택 수에 따라 앞 단계에서 공급이 종료되어 2단계 일반공급 및 3단계 추첨공급의 물량이 없을 수 있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나,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47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조**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단, 선납금 600만원 이상 조건은 **본인의 청약일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충족되어 있어야 함)**

> ***본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아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1)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2) **세대주**일 것
>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신청자의 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분**

※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이하인 분**

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생애최초 추첨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원	17,604,404원	18,653,970원	19,812,526원	20,971,082원	22,129,638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분**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맞벌이인 경우 200%) 이하인 **분**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청약신청 관련]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혼인신고일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관련]

- **(공급유형 간)**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 간)**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 청약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하되, 분 단위도 동일하다면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인정되고,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단, 부부가 중복접수 시 청약통장은 신청자 각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청약통장 교환 불가).
-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제한사항 관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단계 일반공급 및 3단계 추첨공급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물량을 정해진 비율만큼 선 배정 후 잔여 주택에 대해 일반공급 및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주택타입별로 배정된 주택 수에 따라 앞 단계에서 공급이 종료되어 2단계 일반공급 및 3단계 추첨공급의 물량이 없을 수 있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생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2024.10.16. 이후 출생, 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 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 시작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구분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300,645원	13,203,303원	13,990,478원	14,859,395원	15,728,312원	16,597,229원
신생아 추첨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원	17,604,404원	18,653,970원	19,812,526원	20,971,082원	22,129,638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표11〉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맞벌이인 경우 150%) 이하인 분**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표11〉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11〉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가점표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① 70% 이하	3	맞벌이인 경우 소득 8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2	맞벌이인 경우 소득 80% 초과 110% 이하
	③ 100% 초과	1	맞벌이인 경우 소득 110% 초과
(2) 미성년자녀 수**	① 3명 이상	3	태아(입양) 포함
	② 2명	2	
	③ 1명	1	
(3)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을 초과하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당첨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70% 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5,273,634원	6,161,541원	6,528,890원	6,934,384원	7,339,879원	7,745,37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6,027,010원	7,041,762원	7,461,588원	7,925,010원	8,388,433원	8,851,855원
100% 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287,139원	9,682,422원	10,259,684원	10,896,889원	11,534,095원	12,171,301원
130% 수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5-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2) 미성년자녀 수 입력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자녀 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함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직계비속)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임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입주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 물량을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청약신청 관련]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관련]

- **(공급유형 간)** 신생아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 간)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 **청약접수일이 빠른 사람**[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하되, 분 단위도 동일하다면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의 당첨만 인정**되고,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단, 부부가 중복접수 시 청약통장은 신청자 각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청약통장 교환 불가).
-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타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제한사항 관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특례 관련]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당첨 후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유)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49페이지 출산특례 참고).

[2단계 일반공급 및 3단계 추첨공급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물량을 정해진 비율만큼 선 배정 후 잔여 주택에 대해 일반공급 및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주택타입별로 배정된 주택 수에 따라 앞 단계에서 공급이 종료되어 2단계 일반공급 및 3단계 추첨공급의 물량이 없을 수 있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 47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조**

②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분**(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우선공급 (1순위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원	12,323,083원	13,057,779원	13,868,768원	14,679,757원	15,490,747원
추첨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원	17,604,404원	18,653,970원	19,812,526원	20,971,082원	22,129,638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1〉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1〉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2024.10.16. 이후 출생, 태아 포함)**가 있는 분**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12〉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의 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고, 1순위 내 동일지역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표13〉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12〉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아래를 모두 충족하시는 분 ①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신 분 ② 세대주이신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은 분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표13〉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산정예시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84페이지 2-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불인정)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12〉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12〉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 물량을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표13〉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결정하고,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 및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 물량을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유의사항

[청약신청 관련]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중복신청 관련]

- **(공급유형 간) 특별공급**(유형 무관) **1번, 일반공급 1번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와 그 배우자 간)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 청약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 시간을 포함하되, 분 단위도 동일하다면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기준)이 많은 자]**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이 인정되고,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단, 부부가 중복접수 시 청약통장은 신청자 각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청약통장 교환 불가).
-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간) 일반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청약제한사항 관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 제출 서류]

- **(출생)**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주택 계약의 체결이 불가하고,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의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주택 계약의 체결이 불가하고,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 후까지도 지속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 이후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양)**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주택 계약의 체결이 불가하고,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및 3단계 추첨공급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물량을 정해진 비율만큼 선 배정 후 잔여 주택에 대해 일반공급 및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주택타입별로 배정된 주택 수에 따라 앞 단계에서 공급이 종료되어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및 3단계 추첨공급의 물량이 없을 수 있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시 확인사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주택우선매입 등)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 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 신청자의 청약 신청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당첨 후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유)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49페이지 출산특례 참고).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주택공공매입 안내

■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아래 기간만큼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 (~로부터)	기간	관련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의무	최초 입주가능일	5년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재당첨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 「주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내용과, 「주택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라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하여야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 됩니다.
-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SH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S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주택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S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전매 알선 포함)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알선 포함)을 위반한 경우 「주택법」 제64조제7항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공매입 관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서, 「주택법」 제78조의2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서류(분양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S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S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제한기간 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S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합니다.
- 위의 경우 SH는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과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
  -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
  - **(거주의무기간은 경과했으나 전매제한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입주금을 합산한 금액(다만, 이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매입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매입비용으로 지급).

3.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합니다.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51페이지 '공급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1층을 대상으로 배정)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에 대한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는 포함하지 않음)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공급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신청일자에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청약 신청 시 '최하층 우선배정 요청' 문항에 체크 -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 제출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47페이지 참고)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 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로 본청약을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당첨 취소 및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됩니다.

※ 다만,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택타입 배정 결과를 확인한 후 해당 타입을 원치 않아 '당첨포기(사전청약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는 상실되나 청약통장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 따라서 당첨포기(취소) 완료 후에는 고덕강일지구 3단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지구의 청약에도 가능합니다 (단, 고덕강일지구 3단지 특별/일반공급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반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 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 등].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및 일반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간 중복청약할 수 없으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5. 예비입주자 등에 대한 사항

■ 공통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입니다. 해당 기간 경과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의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사전청약 특별공급 당첨자 및 본청약 특별공급 당첨자의 부적격, 미계약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 중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경우, **계약 및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점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을 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하신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경우 수정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 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 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105페이지 "〈표 13〉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동일 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5 신청일정 및 신청접수 유의사항

★ 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1. 신청일정

일정구분			접수기간	장소
사전청약 당첨자			2026.10.26.(월) 10:00 ~ 10.27.(화) 17:00	· 인터넷신청 –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방문 인터넷 대행 접수 – 장소 : SH 2층 대강당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연결통로) – 대행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 대행 접수는 유형별 접수기간 중 10:00~16:00 내 (신청 마감시간 1시간 전)에 공사에 도착하신 분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타입 추첨결과 발표			2026.10.29.(목) 16:00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당첨포기 신청			2026.10.30.(금) 10:00~17:00	
특별공급	청년		2026.11.02.(월) 10:00 ~ 2026.11.03.(화) 17:00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1순위자	서울시 2년 이상 거주	2026.11.04.(수) 10:00 ~ 17:00	
일반공급	1순위자	서울시 2년 미만 거주, 인천·경기 거주	2026.11.05.(목) 10:00 ~ 17:00	
일반공급	2순위자		2026.11.06.(금) 10:00 ~ 17:00	
당첨자발표			2026.11.26.(목) 16:00 이후	

2. 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인증서의 경우 시스템점검 또는 오류 등으로 청약기간 중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두 개 이상의 인증서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배치도(10~14페이지) 및 주택타입별 평면도(15~39페이지)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주택타입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으나, 원하는 타입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한 해당 공급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접수일자 마감시간 전까지만 신청내용을 변경(청약 신청 취소 포함)**할 수 있고,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변경 및 취소가 절대 불가한 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은 **신청한 날짜의 접수기간 내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예시: 11.05. 신청자는 11.05. 17:00까지만 취소 가능, 그 이후는 취소 불가).
- 신청접수 시 신청내역에 대해 적합성 등은 검증하지 않으며, 신청자격 적격여부 검증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분(청년 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 당첨자 및 당첨자의 부·모,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당첨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해 실시합니다.
- **공급유형에 따라 신청일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당첨자 확정 후)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청약 접수 완료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 유형에 따라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방법

1. PC인터넷 신청·모바일 신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소지하고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공동인증서 사용을 위해 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H인터넷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SH 홈페이지(www.i-sh.co.kr)** 또는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간편인증서 종류 :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통신사 PASS,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토스).

※ 일부 인증서의 경우 시스템점검 또는 오류 등으로 청약기간 중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두 개 이상의 인증서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메인화면의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청하기" 클릭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택 1) 로그인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및 당첨된 주택형 내 주택타입 선호순위 선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선호주택타입 신청 포함) → (청약신청 완료 후) 주택형(주택타입) 발표 확인
  ※ 주택타입 결과 확인 후 청약 신청 포기를 원할 시 기간 내 포기 신청 필요(자세한 사항은 93페이지 확인)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메인화면의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청하기" 클릭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택 1) 로그인 → "특별공급" 선택 → 공급구분(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및 주택형(49㎡, 59㎡) 및 주택타입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메인화면의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청하기" 클릭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택 1) 로그인 → "일반공급" 선택 → 주택형(49㎡, 59㎡) 및 주택타입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일자 :** (사전청약 당첨자) 2026.10.26.(월) 10:00 ~ 10.27.(화) 17:00, (특별공급) 2026.11.02.(월) 10:00 ~ 11.03.(화) 17:00,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2026.11.04.(수) 10:00 ~ 17:00 , (일반공급, 1순위 기타지역) 2026.11.05.(목) 10:00 ~ 17:00,
  (일반공급, 2순위) 2026.11.06.(금) 10:00 ~ 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공급유형별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유형의 접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주소 입력 시 : 지역구분 선택 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SH 홈페이지(www.i-sh.co.kr)및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2. 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안내 [대상 :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 **청약 신청 안내사항**

- 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며, **방문 인터넷 대행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구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가 절대 불가한 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인터넷 대행 접수장소**

대행접수 장소	위치	연락처
SH 2층 대강당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지하철 3호선 대청역 하차 8번 출구 연결통로)	1600-3456

-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위한 대행접수는 **공급유형별 해당 접수기간에만 운영**합니다.
- **대행 접수는 유형별 접수기간 중 10:00~16:00 내(신청마감시간 1시간 전)에 공사에 도착하신 분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신청방법**

- 인터넷 대행접수는 고객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를 우리 공사 직원이 입력하면서 인터넷청약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대행접수 시 고객님이 현장에서 모든 입력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내용 미확인 등으로 부적격 처리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 변경·취소 시에는 접수장소를 직접 재방문하여 변경·취소하셔야 하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접수 시 구비서류(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 불가)**

-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아래 표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청주체별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①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만 가능)**만 인정	신청자 구비
		② 본인(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③ 도장(서명 가능)	
		④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발급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본인(신청자)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불요)	
		④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만 가능))	
		⑤ 본인(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⑥ 본인(신청자)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발급	

7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예비입주자는 일정 별도 안내)	계약체결(예비입주자는 일정 별도 안내)
2026.11.26.(목) 16:00 이후	2026.11.30.(월) ~ 12.09.(수) 10:00~17:00	2027.03.22.(월) ~ 04.02.(수) 10:00~17:00
	방문 제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 2층 대강당	**방문 계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 (상세 장소 추후 안내)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당첨자 조회(인증서 로그인)
ARS	ARS 전화 연결(1600-3456) → 4번 → 2번 → 주민등록번호#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또는 ARS(1600-3456)에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부적격자는 소명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 일정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하며,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은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수정할 연락처(주소, 핸드폰 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위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2026.11.30. ~ 12.09.)**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일정은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합니다.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신청자의 배우자)의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 자산 및 주택소유여부의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처리 없이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실물 신분증 지참**
○		② 당첨자 확약서	본인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자 발표'에 게시될 양식** 또는 **서류 제출 장소 현장**에 비치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사전청약자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자 발표'에 게시될 양식**을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격 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④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⑤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⑦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01.0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01.0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개명했을 경우, 개명 전후 모두 발급)**

■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당첨자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처리 없이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실물 신분증 지참**
	○		② 당첨자 확약서	본인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자 발표'에 게시될 양식** 또는 **서류 제출 장소 현장**에 비치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청약자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자 발표'에 게시될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청년 특별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부·모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		④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자 발표'에 게시될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청년 특별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부·모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⑤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자 발표'에 게시될 해당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에 아래 내용 작성**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우리 공사(S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⑥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⑦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초본발급 유의사항)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개명했을 경우, 개명 전후 모두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01.0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01.0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⑩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⑪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⑫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 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를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질병분류기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⑬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SH에서 제공하는 양식)
		○	⑭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⑮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⑯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청년 특별공급		○	①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14〉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14〉**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최대 5개년도 서류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모두 제출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전 재당첨, 주택소유사실 여부 확인
		○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 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14〉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14〉**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신생아 특별공급	○		①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 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②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③ 통장사본		• (양육사실 증빙) 급여 수령 내역 확인
		○	④ 출생증명서	본인	• 2세 미만 자녀를 둔 사실을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신고 전인 경우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전 당첨 여부 확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표14〉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자)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번호 전체 표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번호 전체 표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분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번호 전체 표시)	
소득세 납부 기간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납부내역증명 발급 시 5개년도 소득세 납부년도에 해당하는 서류 발급(소득금액증명 5개년도 발급연도와 일치해야 함) ※ 결정세액이 환급이나 "0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추가 제출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①, ②, ③ 해당직장/세무서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 처리 없이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실물 신분증 지참**
○		② 당첨자 확약서	본인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자 발표'에 게시될 양식** 또는 **서류 제출 장소 현장**에 비치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청약자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자 발표'에 게시될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④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자 발표'에 게시될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⑤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주택분양→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당첨자 발표'에 게시될 해당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에 아래 내용 작성**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우리 공사(S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⑥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⑦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초본발급 유의사항)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⑩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⑪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⑫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 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또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 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 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질병분류기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⑬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SH에서 제공하는 양식)
	○	⑭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또는 '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⑮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 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⑯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등 양육사실 확인
	○	⑰ 통장사본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급여 수령 내역 확인
○		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개명했을 경우, 개명 전후 모두 발급)**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01.0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01.0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⑲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1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원본 (현장수납 불가)** * 주택공급금액 10% + 발코니확장비용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③ 도장 (본인 서명도 가능)	
	④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원본)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계약, 제출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본인(계약자)의 도장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위 구비서류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향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4. 입주자(계약자) 사전점검 방문 및 입주 안내

■ **사전점검 방문 및 입주 일정**

사전점검 방문일(예정)	입주기간(예정)
2027.04.03.(토) ~ 04.04.(일)	2027.05.28.(금) ~ 07.26.(월) [60일]

※ 상기 일정은 준공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 및 잔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해당 시점까지 입주하지 못할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지원센터는 입주 개시 3일 전, 관리사무소는 입주 개시 14일 전에 개소하며, 상세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및 당첨 관련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 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 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되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실제 자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및 지구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지구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 및 입주 관련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 해제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입주금의 10%)을 공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합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포함)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 공사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의 책임입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SH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3.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하며, 부정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구분	설치사항	
장애인 편의시설	공용욕실	좌변기 안전손잡이(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 1개 설치)

※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즉시 설치가 시작되므로, 신청 후 취소나 변경이 절대 불가함

※ 준공 시까지 설치기간이 촉박하여, 입주자 사전점검 시 해당 부문의 시공이 진행 중일 수 있음

구분	내용
신청시기	현장 계약체결기간(2027.03.22. ~ 04.02.) 내 신청 필요
구분서류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신청서는 계약 장소에 비치

5. 지구·주변 및 단지 여건, 기타 유의사항 후

■ **지구 및 주변 여건**

○ 고덕강일지구 내부 및 외부 인접지역에 창고용지, 음식물처리시설, 자원순환센터(폐기물처리시설), 열병합발전소(열공급설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서울양양고속도로, 하남비행장, 지하철 5호선, 지하철 9호선, 고덕차량사업소, 강동공영차고지, 저류지 등이 위치, 계획되어 있어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입지여건(향후 변경사항 포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본 단지 외 시설물들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악취, 대기질 등의 사항에 대하여 피해보상 요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상기사항중누락된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 해당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구 인근 올림픽대로, 강일IC, 서울양양고속도로 및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인한 도로교통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고덕차량기지(철도)가 위치하여 철도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지 주변의 도로교통소음 및 철도소음 여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각 도로관리기관 및 서울교통공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강일IC 램프 및 서울양양고속도로에는 도로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방음벽이 설치(계획)되어 있으며, 일부세대의 경우 조망, 일조, 통풍(바람길) 등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전 해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덕강일지구 내·외 인접지역에 자원순환센터(폐기물처리시설), 열병합 발전소,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지하철 5호선 철도시설(하남선 신설공사 포함), 하남비행장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입지여건(향후 변경사항 포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동 시설물들로 인한 소음진동, 악취, 대기질 등 환경영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덕강일지구 3단지 북동측 교차로에는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토지 지적정리,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조성사업 전체 사업지구가 준공된 후 가능하며, 사업준공은 2027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사업 추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시설(도로시설물/가로시설물/횡단보도 등)은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위치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덕강일지구 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및 녹지 등 각종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반드시 당해 지구·단지를 방문 또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어 소음·조망·일조·도로·환경저해·주변 혐오시설 유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점에 근린공원 등 일부 공원·녹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측에 연접한 강동리버스트 6단지 아파트 경계에 공공보행통로가 위치하여 인접한 305동, 307동, 311동, 312동 저층세대의 경우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초·중학교 현황

학교	학교명	위 치	해당 교육청	연락처
초등학교	강빛초등학교	강동구 강일동 120-4일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2-3434-4353 (초등학교)
중학교	강빛중학교	강동구 강일동 121-3일원		02-3434-4354 (중학교)

※ 학교이용에 관한 사항, 학생 배치관련 문의는 해당 교육청(강동송파교육지원청) 확인 필요

■ 공통사항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승강기, 통신, 소방)은 실시설계 및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주변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진동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주차시설은 310동(1~2호), 311동, 312동, 313동, 314동, 315동, 316동(1~6호), 317동(1~4호)는 지하1층, 이외 동은 지하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에는 도로가 없고 보행로가 있습니다[단, 비상차량(소방차 등), 이삿짐차량, 쓰레기 수거차량만 사용가능, 택배차량이나 개인 차량 사용불가하며, 근린생활시설 이용 지상 주차장은 별도로 있음].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차량 등 대형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 등 지상돌출물이 동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입주자의 거주방식에 따라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덕강일지구는 공공보행로 네트워크 및 지역 내 자전거 네트워크와 연계되고, 공공 자전거정거장(2개소)이 설치되어 공공보행로, 자전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일부 세대는 도로, 공원녹지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인하여 실내가 투시될 수 있고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침해 및 보안등(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 내부 사생활권 침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창호 구조 및 개폐가능 폭 등의 제약으로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이 불가하며,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가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입주지원(하자접수 포함)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재활용품 보관소는 단지 내 8개소가 설치될 예정(근생용 2개 별도)이며, 각동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공용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나 동별로 설치위치 및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302, 304, 305동)의 경우 복도에 오픈구간이 존재하여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난방 방식이므로 개별난방에 비하여 세대 난방공급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난방 지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지하수위 관련 구조물의 부력 방지를 위하여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어 이에 따른 배수펌프 가동 시 저층 세대에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및 관련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경용수, 동파방지열선, 냉난방기(EHP), 배수펌프, 환기장치 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지역난방요금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 및 결로 방지를 위해 송풍기 가동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계량기(전기, 급수, 급탕, 난방, 가스)는 원격식 검침방식입니다.

○ 비주거시설(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 지붕 층에 냉난방기(EHP)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부에 위치한 동의 일부 세대에 소음, 시각적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고(발코니 외부에는 설치공간을 제공하지 않음), 에어컨 실외기 작동 시 그릴 창호를 개방 후 사용해야 합니다. 실외기 작동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이 세대 내부로 전달될 수 있고 조망권, 일조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는 환기장비 및 덕트 등의 설치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환기장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대 타입별로 환기장비의 설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는 개구부 구조물 높이에 따른 원활한 환기 및 과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설치 시 하부에 개구부 높이에 따라 별도의 받침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 환기를 위한 공동연도를 사용하므로 이웃세대의 렌지후드/환기팬 가동으로 인한 냄새(주방의 음식 조리 냄새, 화장실의 담배 냄새 등)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및 각 동 지하에는 아파트의 급수, 급탕, 난방 및 배수를 위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비 가동 시 발생한 소음이 저층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결로 방지를 위하여 지하층(최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제습장치의 가동으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습장치 운영에 따른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상에 재활용보관소에 설치된 수전은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사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승강기 제어반이 최상층 승강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어,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의 경우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 우려가 있으므로 창문 및 실외기 그릴을 닫고 보온 조치를 하는 등 동파에 대한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동결 및 동파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부부욕실 내 샤워부스는 유리문이 없이 일부 파티션이 설치되며, 출입 시 수건걸이 등에 간섭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보행로 또는 단지 내에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전기, 통신, 수도, 가스, 지역난방 맨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화재 발생 시 발생하는 연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연설비(송풍기 등)가 설치된 전용공간], 지하 시설물 환기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통행,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욕실 환기 장치 가동으로 인한 개인별 민감도에 따라 소음 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승하강, 바람 유입 등으로 인해 운행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정은 각종 배선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위생도기 등 마감재의 경우,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별로 설치되는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주방TV폰, 위생기구류, 욕실장 및 욕실 액세서리 등 마감자재는 동일 면적의 타입일지라도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디자인 및 색상이 다를 수 있으며 설치수량 및 배치 구조도 실내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수기, 비데, 인덕션 레인지 등 일부 가전제품 사용 시 순간 전압강하 현상에 의해 세대 내 전등에 깜빡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전제품 구입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310동 지하2층에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실 및 기계실, 306동 지하2층에 열교환실이 위치하고 있어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 진동 등 생활에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10동 지하2층에 설치된 소화수조 및 소화펌프는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 기준은 관리주체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 310동 지하1층 방재실에 설치된 화재수신기는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 기준은 관리주체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단지 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동 출입구와 차량 동선 간의 거리가 멀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10동과 316동 사이(310동 북측), 304동과 302동 사이(304동 북측), 307동 동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309동 북측에 유아놀이터가 있어 인접한 세대에 소음,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15동과 316동 사이(315동 북측), 301동 북측, 307동과 308동 사이(307동 북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있어 인접한 세대에 소음,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동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며 저층 일부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 시설인 '에어매트(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일부 녹지 내 수목 식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02동, 304동, 305동에 옥상녹화 및 휴게공간 조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에 소음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02동, 304동, 305동에는 옥상녹화 및 휴게공간으로 연결되는 직통계단(1층~9층 옥상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공간은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 직통계단(302동, 304동 및 305동)은 1층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 및 출입 방법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관리·운영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직통계단 각 층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인접 세대의 경우 계단 이용으로 인한 사생활 관련 불편 또는 소음 등 생활환경 관련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동 주변 녹지와 302동, 304동, 305동 옥상에 텃밭 조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에 소음,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주변 녹지에 휴게공간 조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에 소음,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02동, 304동, 305동 복도 등 공용공간에 실내조경 인테리어(인조식물, 자갈깔기 등)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공간을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02동, 304동, 305동 2층 일부 세대 발코니 전면으로 복리시설 지붕층이 위치하여 조망권 침해 및 미관저해, 복사열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01동(경로당), 302, 304동(근린생활시설), 305동(창의도서관), 309동(작은도서관, 어린이집2), 310동(어린이집1)은 2층 일부 세대 발코니 전면으로 복리시설 지붕층이 위치하여 조망권 침해 및 미관 저해, 복사열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

○ 아파트 단위세대 창호는 시스템창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문짝 탈착이 불가하여 이사 시 대형가구 및 가전제품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입주자의 거주방식에 따라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 지하2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일부동(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동) 코어의 경우에는 지하1층까지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301동 4, 7, 10층 및 303동 4, 7, 10, 13층은 전망용 엘리베이터 비상정지층으로,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02동과 304동 사이 및 310동과 316동 사이, 306동과 307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 303동과 309동 사이에 유아놀이터, 307동과 308동 사이와 301동, 315동 북측면에 주민운동시설이 있어 인접한 세대는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설치로 저층세대 및 인접세대에서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2동, 304동, 305동의 옥상녹화 휴게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놀이시설, 주민운동시설, 보안등 등 시설물은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고덕강일지구 내 공공보행통로 네트워크 및 지역 내 자전거도로와 연계되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또는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301동(게스트하우스, 스카이카페), 303동(게스트하우스, 스카이도서관) 고층부에 위치한 공용시설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309동 1층 어린이집/작은도서관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310동 지하1층 실내놀이터, 피트니스센터, 1층 어린이집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시설은 관련 근거에 따라 일부 동에 설치됩니다.

○ 관련 법에 따라 310동 5호 세대는 현관 방화문 주변에 층간방화구획 방화판이 설치됩니다.

○ 세대 급탕 및 난방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됩니다.

○ 지역난방방식이므로 개별난방에 비하여 세대 난방공급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난방 지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등의 전기공급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의 시설물(변압기, 개폐기 등)이 동 주변, 산책로 등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 산책로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우려가 있으므로 창문 및 실외기 그릴을 닫고 보온조치를 하는 등 동파에 대한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결로방지를 위하여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제습장치(에어컨)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민은 장비 가동에 의한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됩니다.

○ 지하2층 일부 피트공간 내 설치된 부대시설용 오배수처리설비로 인해 냄새, 소음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공동현관 주 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비실 등)용으로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실외기 배출 열기에 따른 불편 및 미관 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은 하절기에 외기 온도 차이로 인해 부득히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색채, 마감재료 재질, 조경 등)은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일부 세대는 도로, 공원녹지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 인접하여 실내가 투시될 수 있고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조망권 침해 및 보안등(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 내부 사생활권 침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경용수, 동파방지열선, 결로방지 에어컨, 배수펌프, 환기 장치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지역난방요금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기구, 운동기구 등 조경시설물은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노인정,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조경수목 포함)에 대하여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지구설계,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 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제연팬룸, 탑라이트)이 노출될 수 있어,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한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인접세대는 소음, 분진, 악취 및 조망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입면디자인(저층부 도장 디자인 포함), 주출입구, 조경, 색채, 몰딩, 창호, 문주, 부대복리시설, 옥상 장식물, 필로티,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마감사양, 동선체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목, 시설물 등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위치와 형태, 재료가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는 보행자의 시선에 사생활 또한 조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별도의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수목을 식재합니다.

○ 단지 경계부에는 도로, 주변 부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전용 급속충전기(50kW) 2대, 완속충전기(7kW) 8대가 지하1층 3개소에 나누어 설치되고, 저속형 완속충전기(3.5kW) 161대가 지하1,2층 전체에 분산 설치됩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12동, 313동을 제외한 각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배선을 위한 배관시설이 옥상바닥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반사광으로 눈부심 현상 및 인버터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 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설비가 지하주차장(302동, 304동, 306동, 308동, 309동, 312동, 315동, 316동, 317동 주변)과 옥상(302동, 304동, 305동, 309동, 316동)에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TV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및 피뢰침은 306동 옥탑층에 설치되어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옥상에 야간경관용 조명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아파트 단위세대 구조형식은 장래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인 무량판구조로 설계하였으며, 단위세대 내부 일부 코너부분 등에 기둥 등 돌출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평형이 상하층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가 있으며, 동일 평형 내에서도 발코니(테라스 포함) 면적과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준에 따라 각 세대 내에는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설비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위한 배관이 발코니 천장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천장의 환기배관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49C, 49H, 49I, 59G 세대는 다용도실 환기창호가 설치되지 않아, 문 상부 및 하부에 환기를 위한 공간(이격공간)이 확보된 가구형태의 양개형 도어가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수전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세탁실 발코니는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기가 손빨래 수전과 간섭되거나 수전 사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천정에는 전열교환기 환기장치가 설치되며 그릴창 상부로 세대 급·배기를 위한 덕트가 외부 노출되어 설치됨에 따라 미관저해, 발코니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9C1, 59C2 테라스형 세대는 상층 우수/배수배관이 세대 천정으로 관통하여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59I 복층타입 상층 침실 천장에 윗층의 세탁배수가 관통하여 배수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난방 및 급탕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 단위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수전 설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세탁실은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기가 손빨래 수전과 간섭되거나 수전 사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시스템에어컨은 설치되지 않으며 거실의 스탠드형 및 주침실의 벽체 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배관만 매립 시공되어 있으며(단, 59I 복층세대 냉매배관은 하부층 거실과 상부층 침실2에 설치), 기타 침실에는 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경우, 천장 내 기존 설비와의 간섭으로 충분한 설치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설치 위치 선정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주침실(벽걸이형 설치기준) 및 거실(스탠드형 설치기준)에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될 수 있고 에어컨 실외기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49D, 49E, 49F, 49G, 59A, 59B, 59C1, 59C2, 59D1, 59D2, 59E, 59I타입의 경우, 실외기실이 창호가 설치되지 않은 외부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공간의 청소 등으로 발생하는 배수는 다용도실로 연결된 배수구를 통해 처리됩니다.

○ 에어컨 설치 시 배관 내 압력이 떨어진 세대는 A/S센터로 연락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신 후 에어컨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에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대피공간이나 실외기실 또는 이형 평형으로 인한 상하층 간에 설치되는 우수, 오수배수 선홈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타입별 주방 내 가스배관의 설치 위치 및 시공 형태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가스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세대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에 선홈통 및 우수관 시공으로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된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3층~10층 세대(복도형 세대 제외)의 대피 공간에는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입주 시에는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입주 초기에는 공가 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 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급수·급탕 분배기는 해당 세대의 아래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급수·급탕 사용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음식물 탈수기가 설치되어 있어 실제 사용 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 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9A 세대는 다용도실 내 환기설비(강제배기)가 설치되며, 배기구 설치를 위해 천장 일부만 마감되어 공간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창고에는 분말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외부 충격 등으로 분말자동소화장치의 유리벌브가 파손될 경우 분말소화약제가 방출되어 보관 물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창고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49C,F,G 세대의 경우 욕실에는 슬라이딩 욕실장, 건식 세면대 상부에는 여닫이형 욕실장이 설치되어 총 2개의 욕실장이 설치됩니다.

○ 일부 세대의 창고는 내부에 소공간용 소화기(분말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어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 마감재는 동일 면적의 같은 타입일지라도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디자인 및 색상이 다를 수 있으며, 설치수량 및 배치 구조도 실내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간벽 및 외벽에 면하는 콘센트는 결로현상 및 소음 전달방지 등을 위해 다른 세대와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수기, 비데, 인덕션, 전자레인지 등 일부 가전제품 사용 시 순간전압강하 현상에 의해 세대 내 전등에 깜박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전제품 구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단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종류	내용(수, 종류, 위치도 등)
고덕강일지구 3단지	주차장	1,606대(지하주차장), 4대(근생 지상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계실, 열교환기, 펌프실, 연료전지실, 지하저수조 등
	관리사무소, 방재실	310동 지하1층
	MDF	303동 1층
	통합경비실	304동 1층
	어린이집	어린이집-1 (310동 1층), 어린이집-2 (309동 1층)
	경로당	301동 1층
	작은도서관	309동 1층
	어린이놀이터 (옥외)	어린이놀이터1 (310동), 어린이놀이터2 (304동), 어린이놀이터3 (307동)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 등
	주민운동시설 (옥외)	주민운동시설1 (307~308동 사이), 주민운동시설2 (301동), 주민운동시설3 (315동)
	스카이카페	301동 13~14층
	스카이도서관	303동 17~18층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1 (301동 12층) 게스트하우스2,3 (303동 16층)
	사회적기업	304동 1층
	세탁카페	302동 1층
	안전정거장	304동 1층
	창의도서관	305동 1층
	청소년독서실	309동 지하1층
	실내놀이터	310동 지하1층
	피트니스센터	310동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1~6실 (302동 1층), 7~12실 (304동 1층)
	자전거보관소	각 동 필로티 하부 및 동 주변 510대(옥외 180대, 옥내 330대)
	계절창고	지하1층

■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품목

단지	품 목	제품설명
고덕강일지구 3단지	촉지도식 점자안내판	입식 점자안내판
	실명 점자표지판	각실 점자표지판
	점자블럭	통행 및 출입공간 점자블럭
	대변기, 소변기 장애인 손잡이	•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활동 중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자립을 돕는 설비 • 적용장소 : 일부 부대시설용 화장실
	장애인용 양변기	•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가 사용 후 자동으로 물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설비 • 적용장소 : 일부 부대시설용 화장실
	장애인 겸용 승강기	장애인승강기 겸용 설치
	음성점멸 유도등	• 화재 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을 돕는 설비

■ 기타 유의사항

○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 내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는 입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반 공과금 및 관리비를 입주예정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잔금 납부 전에는 인테리어 공사, 입주청소 등 각종 개인목적을 위한 열쇠불출(비밀번호 수령)이 불가하며, 잔금을 완납하더라도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열쇠불출(비밀번호 수령)이 불가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 하자 관련 문의 및 하자 접수는 입주지원센터 내 하자상담실(운영기간 : 입주개시 3일 전부터 약 6개월간) 및 하자119센터(운영기간 : 입주지원센터 종료 후 약 6개월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후 하자 접수는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단지 여건에 따라 운영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과 부대시설(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복지시설 등) 중 일부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원 업무시설(입주지원센터 및 하자119센터)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장소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포장,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SH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세면기, 변기 위치, 창호 종류 및 위치, 등기구 종류, 벽체, 피난사다리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세대 및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오니,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세대 및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동, 호수에 대하여는 도배, 마루, 가구문짝, 가구손잡이, 도장에 대해 재시공할 예정이며 상기 품목 이외에 대하여 교체요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 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6.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아파트
2. 신 청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3.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74일원(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공동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공동주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력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의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시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이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난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폐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7.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기준 충족 여부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5호, 2020. 4.2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12.28.)
설계조건	창(외기에 직접면함, 간접면함)		기준 충족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면함)		기준 충족
	거실의 외벽(외기에 간접면함)		기준 충족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면함)		기준 충족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간접면함)		기준 충족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면함)		기준 충족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간접면함)		기준 충족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기준 충족
	열원설비		기준 충족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기준 충족
	창면적비		기준 충족
	발코니외측창 단열		기준 충족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기준 충족
	조명밀도		기준 충족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기준 충족
의무사항 이행여부	건축부문	단열조치 준수(가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기계부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지역난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급탕·급수펌프(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수변전설비(가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비(다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3. 24.>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아파트 건 축 주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준공(예정)일 : 2026년 10월 25일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74일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층 수 : 지하 2층, 지상 29층 연 면 적 : 176,903.84㎡(평가연적 : 176,663.28㎡)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G-SEED-P-2023-0912-9 인증기관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유효기간 : 2023. 08. 11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가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1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8호, 환경부 고시 제2021-66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최우수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마감자재 목록

구분	항목		고덕강일3단지	
			전용49㎡	전용59㎡
현관	현관도어록		디지털형	디지털형
	세대현관문		분체도장급	분체도장급
	바닥		포셀린타일	포셀린타일
	마루귀틀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신발장		PET마감	PET마감
거실/주방	벽지/천장지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바닥		강화합판마루	강화합판마루
	거실아트월		포셀린타일	포셀린타일
	주방벽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주방가구	문짝	PET마감	PET마감
		상판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침실1	바닥		강화합판마루	강화합판마루
	벽지/천장지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침실 문틀/문짝		인테리어시트	인테리어시트
	드레스룸		설치 (49B,I,J)	설치 (59A,B,C,D,E)
침실2,3	바닥		강화합판마루	강화합판마루
	벽지/천장지		실크도배지	실크도배지
	침실 문틀/문짝		인테리어시트	인테리어시트
욕실	벽		도기질타일	도기질타일
	바닥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천장		SMC천장재	SMC천장재
주방설비	주방TV		설치	설치
	레인지후드		침니형(공용배기방식)	침니형(공용배기방식)
	가스쿡탑		3구(그릴미부착)	3구(그릴미부착)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설치	설치
	싱크수전		바디터치형	바디터치형
욕실설비	세면기(가족욕실)		페데스탈일체형	페데스탈일체형
	세면기(부부욕실)		-	페데스탈일체형
	세면기(49C,F,G 욕실)		언더카운터형	-
	욕조(가족욕실)		세라믹	세라믹
	욕조수전(가족욕실)		싱글레버	싱글레버
	세면기 수전(가족,부부욕실)		싱글레버	싱글레버
	샤워수전(부부욕실)		-	레인형 샤워
	청소용수전세트(부부욕실)		-	미니건(청소용)
	양변기(가족욕실)		비데일체형	비데일체형
	양변기(부부욕실)		-	원피스형
	수건걸이		일반형	일반형
	휴지걸이		매립형	매립형
	코너선반(가족욕실)		유리형	유리형
	양변기청소솔		설치	설치
발코니	발코니수전		설치	설치
	손빨래수전,세탁기수전(다용도실)		설치	설치

구분	항목	고덕강일3단지	
		전용49㎡	전용59㎡
기본 에어컨 냉매배관		거실 및 주침실	거실 및 주침실
실별온도조절기		설치	설치
세대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강제환기)	전열교환기(강제환기)
난방시스템		지역난방	지역난방
조명설비	식탁등	LED	LED
	실별조명등	LED	LED
배선기구	현관일괄소등스위치	설치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설치	설치
정보통신설비	월패드	설치	설치

10.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아래 공시내역은 실제 분양가격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세분류	단지 총 금액	공급면적 ㎡당
공사비 (51개)	토목 (13개)	조경공사	4,460,653	43
		토공사	8,022,543	76
		흙막이공사	6,449,932	61
		비탈면보호공사	-	-
		옹벽공사	-	-
		석축공사	-	-
		우오수공사	629,456	6
		공동구공사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
		도로포장공사	360,591	3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
		정화조시설공사	-	-
		부대시설공사	1,072,797	10
		소 계	**20,995,971**	**200**
	건축 (23개)	공통가설공사	8,096,675	77
		가시설물공사	8,655,067	82
		지정 및 기초공사	6,355,808	61
		철골공사	82,116	1
		철근콘크리트공사	69,593,290	663
		용접공사	-	-
		조적공사	14,159,743	135
		미장공사	6,487,194	62
		단열공사	1,773,714	17
		방수.방습공사	6,602,157	63
		목공사	8,075,534	77
		가구공사	2,151,449	21
		금속공사	8,016,195	76
		지붕 및 홈통공사	262,772	3

항목		세분류	단지 총 금액	공급면적 ㎡당
공사비 (51개)	건축 (23개)	창호공사	13,066,668	125
		유리공사	4,089,396	39
		타일공사	3,744,507	36
		돌공사	5,846,686	56
		도장공사	5,501,798	52
		도배공사	2,085,756	20
		수장공사	4,220,002	40
		주방용구공사	4,434,422	42
		그 밖의 건축공사	2,437,671	23
		소 계	**185,738,622**	**1,770**
	기계 설비 (9개)	급수설비공사	2,691,263	26
		급탕설비공사	2,159,420	21
		오배수설비공사	7,096,579	68
		위생기구설비공사	4,462,592	43
		난방설비공사	8,085,901	77
		가스설비공사	1,721,911	16
		자동제어설비공사	915,605	9
		특수설비공사	2,931,311	28
		공조설비공사	2,255,613	21
		소 계	**32,320,194**	**308**
	그밖의 공종 (4개)	승강기공사	4,089,742	39
		전기설비공사	22,997,445	219
		정보통신공사	13,406,059	128
		소방설비공사	16,752,198	160
		소 계	**57,245,444**	**546**
	그밖의 공사비 (2개)	일반관리비	6,615,090	63
		이윤	3,335,086	32
		소 계	**9,950,176**	**95**
간접비 (6개)		설계비	4,405,888	42
		감리비	10,563,329	101
		분담금 및 부담금	1,658,708	16
		그 밖의 사업비성경비	32,845,113	313
		일반분양시설경비	-	-
		보상비	-	-
		소 계	**49,473,037**	**471**
그밖의비용(1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92,077,055	877
건물분양가격 계			447,800,500	4,267

※ 공급면적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11.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구 분	단지 총액	구 분	단지 총액
구조형식	13,081,601	말뚝박기 공사비	7,107,322
공동주택성능등급	7,848,961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7,627,616
법정초과 복리시설	1,414,913	감리비 가산비	10,441,661
인텔리전트설비	9,856,669	설계비 가산비	565,00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3,571,292	안전관리비	693,622
사업승인 조건부	10,740,263	법령, 조례 등의 제정·개정	17,909,007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1,219,123	**소 계**	**92,077,055**

※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분양가격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2. 택지의 감정평가기관 및 감정평가액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가. 가온감정평가법인	나. 중앙감정평가법인
383,134,550천원	385,208,350천원	381,060,750천원

13.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등 현황

지구 및 단지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고덕강일지구 3단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업자등록번호 : 218-82-00136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업체명 : 에이치에스화성(주) ○사업자등록번호 : 501-81-00050	-	○업체명 :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주관사)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공동)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공동) ㈜건일엠이씨 (분담) ㈜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분담)
		○업체명 : ㈜서해종합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116-81-37932		
		○업체명 : 홍문종합건설(주) ○사업자등록번호 : 404-81-11635		

14. 견본주택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고덕강일지구 3단지 견본주택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74 ○ **주차** : **주차가 불가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이 가능한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등)에 한해 주차 가능하나 매우 협소하여 주차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오시는 길** - 강일역 5호선 1번출구로 나와서 342, 3318, 강동02 버스 이용 - 상일동역 5호선 6번출구로 나와서 342, 3318 버스 이용 - 상일동역 5호선 5번출구로 나와서 강동02 버스 이용 ※ 방문 전 교통편 및 환승경로를 개별적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26.10.22.(목) ~ 2026.10.25.(일) 10:00~17:00 ※ 2026.10.22.(목) ~ 2026.10.23.(금)은 사전청약 당첨자 전용으로만 운영됩니다.
사이버 견본주택	**공식 홈페이지 및 문의전화**
SH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메인 화면 왼쪽 아래 '사이버 모델하우스' 〉 주택분양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홈페이지 : 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www.i-sh.co.kr/app ○ 문의전화 : 1600-3456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